

경상북도



선 람	기관(부서)의 장

제6553호 2021년 7월 15일(목)

경 상 북 도

■ 조 례

-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524호) 8

회 람								
--------	--	--	--	--	--	--	--	--

발행인:경상북도지사 편집:대변인실

○ 경상북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525호)	11
○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526호)	14
○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527호)	20
○ 경상북도 공공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528호)	92
○ 경상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529호)	100
○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530호)	102
○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531호)	104
○ 경상북도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532호)	105
○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533호)	109
○ 경상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534호)	112
○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535호)	119
○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536호)	121

-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537호) 128
- 경상북도 화훼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538호) 133
- 경상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539호) 135
-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540호) 140
-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541호) 145
- 경상북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542호) 147
-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543호) 150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544호) 153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545호) 157

■ 훈 령

- 경상북도 공무원근로자 정수관리규정 일부개정령
(경상북도 훈령 제1588호) 162

■ 고 시

-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1-228호) 169
- 사방지 지정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1-229호) 171
- 현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준공인가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1-230호) 173
- 구매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1-231호) 175
-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1-232호) 184
- 북경주 웰니스 관광단지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1-233호) 185
- 경상북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1-234호) 187

■ 공 고

- 제4단계 낙동강수계 경상북도 관할 수계구간별 목표수질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1-1394호) 191
- 「수산업경영인」 선정취소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1-1395호) 195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1-1399호) 197

시 군

■ 고 시

- 구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구미시 고시 제2021-131호) 204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영천시 고시 제2021-58호) 206
-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의성군 고시 제2021-83호) 213

■ 공 고

- 영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영천시 공고 제2021-963호) 221
- 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경산시 공고 제1300호) 224
- 영양 군계획시설(수변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열람공고
(영양군 공고 제2021-608호) 227
- 칠곡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칠곡군 공고 제2021-771호) 234

기 타

■ 지시사항

- 도지사 지시사항 243



경 상 북 도

조 례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1년 7월 15일

경상북도 조례 제4524호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도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을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
3. “대중교통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2.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3.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의 편의증진
4. 오지·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5. 대중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② 도지사는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우 국가의 교통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도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교통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교통시설을 확충할 때에는 대중교통이 우선 확보되도록 하고, 도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대중교통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관계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보건위생 증진 방안 및 감염병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도지사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2. 저상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
4.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 개선 및 서비스 향상
5.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 제도

제7조(대중교통 이용권장) 도지사는 대중교통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도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도민 스스로 대중교통 이용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의 날 제정 등 각종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1년 7월 15일

경상북도 조례 제4525호

경상북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리랜서가 고용 및 근로조건 등과 관련하여 권익 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프리랜서”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받지 않고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프리랜서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를 도에 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기본계획)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프리랜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 대책
3.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4. 프리랜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원 확보방안
5.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6.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에 따라 매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형

태, 보수, 계약조건 등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파악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법률지원) 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률상담을 받은 프리랜서에 대하여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
 2. 프리랜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3. 프리랜서의 창의적인 활동 조장 및 육성
 4. 프리랜서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연구·개발
 5. 프리랜서의 불공정 계약 사례 조사 및 개선을 위한 캠페인
 6. 그 밖에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중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도에 설립한 비영리 법인·단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1년 7월 15일

경상북도 조례 제4526호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생성하거나 다른 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출자·출연기관”이란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경상북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며,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 관계 공무원
2. 경상북도의회 의원
3. 전문가, 교수 등 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결격사유) ① 위원 중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긴급한 사항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전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회의록 등을 통해 회의를 충실히 기록하도록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집행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데이터기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도지사는 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도지사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한 정책·사업 등을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두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의 효과적 수행과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데이터기반 정책수립 및 평가
2. 통계·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사전협의제 운영
3.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통계 개발과 데이터 분석사업
4. 농업·환경·관광·물류·교통·교육 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5. 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6. 데이터 관련 포럼, 경진대회,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
7. 데이터기반행정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8.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2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의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한 기관이나 부서, 공무원·직원 등을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1년 7월 15일

경상북도 조례 제4527호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처리 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제1항 관련)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중소벤처 기업과 에너지 산업과 공통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 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징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51조	시장·군수
중소벤처 기업과	2.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판매중지·개선·수거·파기의 명령 수거·파기의 이행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사실 공표, 교환·환불수리 기타의 사항 이행명령 나. 과태료 부과징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 법」 제34조 같은 법 제43조	
민생 경제과	1.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사무 가.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 또는 수입에 따른 내용기재 서류 접수 나. 계량기의 제작업 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계량에 관한 법률」 제5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 같은 법 제6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민 생 경 제 과	다. 계량기의 수리 및 자체수리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시장·군수
	라. 계량기 정기검사 및 수시(수리)검사	같은 법 제32조	
	마. 정기검사의 증인 표시	같은 법 제33조	
	바.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34조	
	사. 개선명령	같은 법 제35조	
	아. 부정계량기의 처리	같은 법 제37조	
	자. 계량기 제작업 등의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같은 법 제38조	
	차. 청문	같은 법 제41조	
	카.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51조	
	2.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대부업 등록, 등록증 교부, 등록부 열람, 등록갱신, 등록증 반납 등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2조의4		
나. 대부업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 수리 등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다. 대부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보고, 자료제출 등 필요한 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12조제1항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민 생 경 제 과	라.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 설치한 경우 필요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영업소 검사(공동검사 포함) 요청 마.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에게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요청 바.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및 당해 명령의 내용 통보 사. 대부업자 등의 보고서 제출 아. 영업정지 자. 대부업자의 등록취소 및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 차.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및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미리 사실통보 카.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타. 등록수수료 파.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하.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제12조제7항 같은 법 제12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제13조제3항부 터 제5항까지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제18조의8 같은 법 제21조제1항부 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민 생 경 제 과	<p>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집단공급 사업자 및 판매사업자에 대한 조정명령</p> <p>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다음의 사무</p> <p>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공정위 사실통보</p> <p>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변경인가</p> <p>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비조합원 공급실적 신고</p> <p>라. 보건·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개설 신고</p> <p>마. 조합 해산 신고</p> <p>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감독</p> <p>사. 설립인가 취소 및 취소사실 통보</p> <p>아. 청문</p> <p>자. 과태료 부과·징수</p> <p>5.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격표시 명령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의무자의 지정</p>	<p>「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3조</p> <p>「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p> <p>같은 법 제23조 제3항 및 제26조</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p> <p>같은 법 46조의2제1항</p> <p>같은 법 제53조제2항</p> <p>같은 법 제81조</p> <p>같은 법 제82조</p> <p>같은 법 제83조</p> <p>같은 법 제88조제4항</p> <p>「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p>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민 생 경 제 과	<p>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보고·명령 및 검사</p> <p>다.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p> <p>라. 이의신청 접수 및 결과 통보</p>	<p>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p> <p>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p> <p>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p>	시장·군수
사 회 적 경 제 과	<p>1. 협동조합설립신고에 관한 다음 업무</p> <p>가. 협동조합 설립신고</p> <p>나. 협동조합 정관변경 신고</p> <p>다. 협동조합 합병 및 분할 신고</p> <p>라. 협동조합 해산신고</p> <p>마. 협동조합 과태료 부과·징수</p> <p>바. 신고필증 교부</p>	<p>「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p> <p>같은 법 제16조</p> <p>같은 법 제56조</p> <p>같은 법 제57조</p> <p>같은 법 제119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6조</p>	시장·군수
교 통 정 책 과	<p>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등에 대한 보고검사</p> <p>2.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는 허가</p> <p>3. 자동차등록판 제작, 발급 및 봉인</p> <p>4.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의 지정 등</p>	<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p> <p>「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항</p> <p>같은 법 제19조</p> <p>같은 법 제20조</p>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교통 정책과	5.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	같은 법 제21조	시장·군수
	6.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 운행 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의 발급과 반납의 처리	같은 법 제27조	
	7.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와 멸실된 경우의 조치	같은 법 제7조	
	8.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 사항의 멸실, 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같은 법 제7조제3항	
	9.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 신청의 처리	같은 법 제7조제4항	
	10. 자동차 신규등록 및 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같은 법 제8조 및 제18조제2항	
	11. 자동차 신규등록의 거부	같은 법 제9조	
	12.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부착·봉인 및 재발급	같은 법 제10조	
	13. 회수(반납)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폐기	같은 법 제10조제6항	
	14. 자동차의 변경등록	같은 법 제11조	
	15. 자동차의 이전등록	같은 법 제12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교 통 정 책 과	16. 자동차의 말소등록 처리와 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수납영치 및 폐기	같은 법 제13조	시장·군수
	17. 폐차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인정	같은 법 제13조제1항	
	18. 수출이행여부의 신고사항 처리	같은 법 제13조제8항	
	19. 자동차 말소사실 증명서 발급	같은 법 제13조제9항	
	20. 자동차의 압류등록	같은 법 제14조	
	21. 자동차 등록번호의 부여	같은 법 제16조	
	22. 자동차 등록에 관한 이의 신청의 처리	같은 법 제28조	
	23.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제작·수불 교부와 봉인 시행 기록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24. 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조	
	25. 자동차 정기점검 기간의 조정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0조	
	26. 검사유효기간의 연장과 유예조치	같은 법 시행규칙 제 75조	
	27.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등록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 당법」 제4조	
	28. 체약국 자동차의 정비·검사 및 폐차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 한 규칙」 제7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교통 정책과	29. 국제교통자동차 운행표의 반납	같은 시행규칙 제8조	시장·군수
	30. 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제원 보유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처리	같은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용정지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 반납, 영치, 반환 및 봉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	
	3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운용계획 수립·시행	같은 법 제88조제5항	
	33. 자가용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같은 법 제83조	
	나. 자동차등록증 및 번호판 반납, 영치, 반환 및 봉인	같은 법 제83조2항(같은 법 제8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4조	
	34. 일반·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또는 효력 정지	같은 법 제87조	
	35. 도지사가 개설 명령한 버스노선의 평균승차인원 조사 및 운행 횟수 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36.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교 통 정 책 과	가. 사업면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	시장·군수
	나. 사용약관 신고수리	같은 법 제40조	
	다. 시설사용료 인가	같은 법 제41조	
	라. 사용명령	같은 법 제45조	
	마.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신고수리	같은 법 제48조(같은 법 제1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바. 상속신고수리	같은 법 제48조(같은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 휴업·폐업허가	같은 법 제48조(같은 법 제1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 보고·검사 등	같은 법 제79조	
	자. 청문	같은 법 제86조	
	차.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4조	
	37. 자동차의 직권말소 통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38. 도난차량 말소등록	같은 법 제13조제7항	
	39. 계약국 자동차관리 업무의 대행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교 통 정 책 과	<p>40.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사용신고·변경신고</p> <p>나. 유상운송허가·임대허가</p> <p>41. 노선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등록대상 사업으로 한정한다)</p> <p>가. 사업등록</p> <p>나. 수송시설확인, 운송개시기일 연기 또는 개시기간 연장승인</p> <p>다. 운임·요금 신고수리</p> <p>라. 운송약관 및 약관변경 신고수리</p> <p>마. 사업계획 변경등록 및 신고수리, 사업계획 변경 제한</p> <p>바. 사업관리위탁 신고수리</p> <p>사. 사업양도·양수 신고수리 및 양도·양수 인가 제한, 법인합병 신고수리</p> <p>아. 상속 신고수리</p> <p>자. 사업휴지 또는 폐지허가, 신고수리</p>	<p>「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p> <p>같은 법 제56조</p> <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단서</p> <p>같은 법 제7조</p> <p>같은 법 제8조</p> <p>같은 법 제9조</p> <p>같은 법 제10조</p> <p>같은 법 제13조</p> <p>같은 법 제14조</p> <p>같은 법 제15조</p> <p>같은 법 제16조</p>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교 통 정 책 과	차. 중대한 교통사고 보고수리 및 처리	같은 법 제19조	시장·군수
	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같은 법 제23조	
	타. 차령연장	같은 법 제84조	
	파. 사업등록의 취소, 정지명령 및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 명령	같은 법 제85조	
	하. 청문	같은 법 제86조	
	거. 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	같은 법 제88조	
	너.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4조	
	42.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변경등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및 제65조	
	나. 대여약관 및 약관변경 신고수리	같은 법 제31조	
	다. 사업관리 위탁허가	같은 법 제32조	
	라. 사업개선명령	같은 법 제33조	
	마.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신고수리	같은 법 제35조(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교 통 정 책 과	바. 상속신고수리	같은 법 제35조(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장·군수
	사. 차령연장	같은 법 제84조	
	아. 등록취소, 정지 명령, 사업계획변경 명령	같은 법 제85조	
	자. 청문	같은 법 제86조	
	차. 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	같은 법 제88조	
	카. 과태료부과·징수	같은 법 제94조	
	43. 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44. 자동차경매장 개설·운영 승인	같은 법 제60조제1항	
	45. 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46.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	
	47.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운송비용전가금지에 대한 조사·보고 등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나. 보고·검사 등	같은 법 제17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교통정책과	48.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운영 49. 운수사업자, 화물자동차 소유자 등 관련 보고·검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6항 같은 법 제61조제1항	시장·군수
외교통상과	1. 시·군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허가 2.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품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검사(국내 유통 중인 물품에 한정한다) 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국내 유통 중인 물품에 한정한다)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공무국외여행규정」 제3조제1항 「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 같은 법 제33조의2 같은 법 제59조제2항제3호, 제4항	시장·군수
자치행정과	2급 및 3급의 비밀취급의 인가	「보안업무규정」 제7조제2항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요강」 제10조제2항	시장·군수
회계과	1. 도유재산 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 가. 도유일반재산의 대부 나. 도유재산(행정, 일반)의 보존 관리 및 실태조사(도 본청 및 사업소에서 직접 사용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제외)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회 계 과	2. 은닉된 도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3. 도유재산 중 도지사가 매각 승인한 일반재산의 처분	같은 조례 제64조 같은 조례 제3조	시장·군수
문 화 예 술 과	지방문화원(사단법인) 사무의 검사 및 지도 감독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시장·군수
농 업 정 책 과	농지전용허가·협의 부지관리(도지사의 허가·협의 처분 건)	「농지법 시행령」 제58조	시장·군수
농 식 품 유통 과	생산단계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농산물 등의 안전성 조사 2. 시료 수거 등 3.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4. 과태료 부과·징수	「농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123조	시장·군수
친 환 경 농 업 과	1. 공동방제비용 부담통지서 교부 2. 농약검사공무원증 발급교부	「식물방역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농약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시장·군수
농 촌 활 력 과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농어촌정비법」 제17조 같은 법 제24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축 산 정 책 과	1. 보호가축의 지정·고시 2.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교부	「축산법」 제8조제1항 같은법 제11조	시장·군수
동 물 방 역 과	1. 공수의에 대한 업무위촉 및 지휘·감독 2. 가축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보고서 청구 3.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자의 허가, 등록사항 보고	「수의사법」 제21조 같은 법 제37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 칙」 제58조	시장·군수
환 경 정 책 과	1. 대기오염, 소음·진동 측정망 설치 및 상시측정 2.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3.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4. 관계기관 협의 5.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조치명령 6. 보고 및 검사 등(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 7. 과태료 부과 징수 등(위임된 권한 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대기 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 제4호, 제7호는 도에서도 병행)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 제2항 및 「소음·진동관 리법」 제3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제2항 및 「소음·진동관 리법」 제4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제5조 「소음·진동관리법」 제5 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7 호·제8호 같은 법 제94조제4항제 5호·제6호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 정책과	<p>8. 폐기물처리업 및 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업무</p> <p>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다음 사항</p> <p>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의 중요사항 변경을 포함 한다)의 제출</p> <p>2)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 여부 통보</p> <p>3) 폐기물처리업 허가, 변경 허가·신고 및 의제 처리 등</p> <p>4) 폐기물 처리업 기준 제외 인정</p> <p>5)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 연장</p> <p>6) 폐기물처리업 허가조건 부여</p> <p>7) 폐기물 재위탁 승인</p> <p>8) 허가증 교부 및 재교부</p>	<p>「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시행규칙 제28조제 1항</p> <p>같은 법 제25조제2항</p> <p>같은 법 제25조제3항,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 조, 제33조</p> <p>같은 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 조제6항, 별표 7</p> <p>같은 법 제25조제4항</p> <p>같은 법 제25조제7항</p> <p>같은 법 제25조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 조, 별표 8</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28 조제7항, 제30조</p>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환경 정책과	9) 폐기물처리업자 보관량, 보관기간 초과 승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 조제2항	시장·군수
	10) 임시보관장소의 설치 및 변경 승인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9 조, 제11조	
	나.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같은 법 제27조	
	다. 과징금 처분에 대한 부과·징수·취소(시·군수입) 및 가중·감경, 체납 처분 등	같은 법 제28조, 제46 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 23조의3	
	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 조	
	마.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대상자 선발, 통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 조제2항·제3항	
	바. 휴업·폐업 등의 신고수리 및 폐기물처리 확인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제59조의2	
	사. 폐기물처리신고, 변경신고수리, 신고필증 교부 및 기타 행정처분(폐쇄명령, 폐기물처리 금지명령), 감경, 체납 처분 등	같은 법 제46조제1항부 터 제4항까지,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아. 폐기물 처리기간 예외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 1항제7호	
	자. 처리능력 2톤/시 이상 소각 시설의 계량시설 미설치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 조 및 별표 9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 정책과	차.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의 계량 시설 및 세륜·세차 시설 미설치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별표 9	시장·군수
	카. 관리형매립시설에 대한 유사 차수 시설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별표 9	
	타. 매립되는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이 침출수 발생이 없거나 발생하는 침출수가 항상 기준이하로 배출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별표 9	
	파.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온도 지시계 등 계측장비의 비정상 작동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11	
	하. 매립시설 주변 수질검사결과 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11	
	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환경영향 조사 결과 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별표 13	
	너. 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신청 접수·수리, 권리자에 통보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	
	더. 매립시설 검사기관이 실시한 안정성 검토성적서의 제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	
	러. 폐기물 처리 실적의 보고, 전산입력 등	같은 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머.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기회부여 및 행정처분의 감경 등 결정	같은 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 정책과	<p>버. 폐기물처리업자, 공제조합 등에 방치 폐기물 처리명령, 조치명령(변경명령), 처리이행 보증금의 정산, 처리명령의 연기 등</p> <p>서.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금의 수령, 계약, 보험증서 원본 접수, 보험 계약의 갱신 명령 등</p> <p>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p> <p>저. 권리의무승계신고의 수리, 양수·인수·합병 등 경우 허가, 관계기관 협조 등</p> <p>처. 사업장, 지정폐기물 보관기준 완화 및 보관기간 예외인정, 재활용시설 기준 완화 인정</p> <p>커.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의 농지·저지대·연약지반 등의 이용에 대한 인정</p> <p>터. 의료폐기물(인체조직과 동물의 사체)의 공설묘지중 매장할 수 있는 장소 인정,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연장</p> <p>퍼.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 등에 폐기물 처리명령</p>	<p>같은 법 제40조제2항부 터 제4항까지, 제10항· 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2조 및 제23 조</p> <p>같은 법 제40조제8항·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p> <p>같은 법 제32조제3항</p> <p>같은 법 제33조 제1항부 터 제7항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 별표 5 및 제66조, 별표 17</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3제1항 및 별표 제5 의3제2호라목</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 및 별표 5</p> <p>같은 법 제39조의2 및 39조의3</p>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 정책과	허.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금 신청서 접수 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 조	시장·군수
	기.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등	같은 법 제25조의3제2 항부터 제4항까지, 제6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4조의10	
	나. 폐기물 반입금지 명령, 반입재개 신청 접수 및 통보	같은 법 제47조의2	
	다.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66조	
	9.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다음 업무		
	가. 토양보전 필요지역 토양 정밀조사 실시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제4항	
	나. 토지, 건축물 등의 수용 및 사용	같은 법 제7조제1항	
	다.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같은 법 제8조	
	라. 타인토지에의 출입으로 인한 손실보상	같은 법 제9조	
	마. 토양오염방지 조치 명령 등	같은 법 제15조제1항	
	10. 도립공원에 관한 다음 업무		
	가. 공원구역내 산림 기타자원의 보호 및 안전관리대책	「자연공원법」 제3조	
	나. 도립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 시설 관리	같은 법 제19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 정책과	다.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 허가 및 공원시설 관리허가	같은 법 제20조	시장·군수
	라. 공원구역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23조	
	마. 공원구역의 원상회복 면제승인, 예치비용 관리 원상회복 조치	같은 법 제24조	
	바. 공원입장료 및 공원시설 사용료의 징수와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허가	같은 법 제37조	
	사. 공원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	같은 법 제38조	
	아. 부당이득금의 징수	같은 법 제38조	
	자. 금지행위의 단속	같은 법 제27조	
	차. 공원구역의 출입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8조	
	카. 자연자원의 조사	같은 법 제36조	
	타. 영업 기타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	
	파.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처분	같은 법 제30조	
	하. 대집행	같은 법 제31조	
	거.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제청	같은 법 제34조	
	너. 허가에 관한 협의	같은 법 제71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 정책과	<p>더. 타인의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p>	같은 법 제72조	시장·군수
	<p>러. 공원별 보전·관리 계획의 수립 등</p>	같은 법 제17조의2	
	<p>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p>	같은 법 제73조	
	<p>버. 주민지원사업</p>	같은 법 제73조의2	
	<p>11. 건설폐기물처리업 및 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업무</p>		
	<p>가.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업계획 적정통보), 변경허가, 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명령 등</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제25조	
	<p>나. 허가조건 부여, 허가증교부(재교부), 허가기간 연장, 방치폐기물 적정 처리 조치</p>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p>다.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승인</p>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p>라. 임시보관장소 승인(변경승인), 승인서교부, 승인사항 통보</p>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p>마. 건설폐기물의 재위탁금지 예외인정</p>	같은 법 제23조	
<p>바. 과징금의 처분 등</p>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환경 정책과	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변경승인) 및 신고(변경신고)	같은 법 제27조	시장·군수
	아. 승인서 및 신고필증 교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 조 및 제18조	
	자.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완료 및 사용 신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차.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개선,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같은 법 제29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카. 개선기간 연장, 완료보고 및 사용 중지 명령 철회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 1항제7호	
	타.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같은 법 제30조제3항	
	파. 권리·의무의 승계 등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하. 휴·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및 보고 검사, 폐기물처리 확인·점검 등	같은 법 제33조·제34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6조	
	거.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및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서류 접수, 보험금수령 등	같은 법 제41조·제42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9조·제20조	
	너.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같은 법 제43조·제45 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 정책과	<p>더. 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승계한 자에 대한 조치·행정대집행 및 처리 이행 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공제 조합과 협의 등</p> <p>러. 청문</p> <p>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수집·운반차량 부착 또는 표기크기 조정, 장기보관 필요성 인정, 건설오니, 폐토석 등 재활용에 따른 중간처리 기준 인정</p> <p>버. 행정처분기준 감경 등</p> <p>서. 과태료 부과·징수</p> <p>12. 경상북도자동차공회전제함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p> <p>나.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p>	<p>같은 법 제45조·제46조</p> <p>같은 법 제57조</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p> <p>같은 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별표 3</p> <p>같은 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별표5</p> <p>「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경상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10조</p> <p>같은 법 제59조 및 같은 조례 제10조</p>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 정책과	<p>다. 공회전 단속업무</p> <p>13.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개선명령</p> <p>나. 보고 및 검사 등</p> <p>다. 과태료 부과징수</p> <p>14.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p> <p>가. 고형연료제품공급계획서 접수</p> <p>나. 고형연료제품 사용자의 고형연료 제품 사용신고</p> <p>다.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에 따른 통보 및 개선사항 제출</p> <p>15.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내 주차위반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p>	<p>같은 법 제59조 및 같은 조례 제10조</p> <p>「다중이용시설 등의 실 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p> <p>같은 법 제13조제1항· 제2항</p> <p>같은 법 제16조</p> <p>「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의3, 같은 법시행규칙 제 20조의6 및 별표 8</p> <p>「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 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p>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환경 정책과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 충전구역에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하는 업무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의6	시장·군수
환경 안전과	1. 배출시설별 배출원 및 배출량조사 등 2.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의한 3~5종 사업장 중 다음사항(다만, 동일 사업장에 대기, 수질이 복합으로 설치된 사업장 중 1개 사업 이라도 사업장 1~2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수리 다. 측정기기의 부착 및 필요한 조치명령 등 라.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마.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바.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사.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및 감면·조정 및 징수유예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17 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82조제1항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및 제 35조의2부터 제35조의4 까지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 안전과	아.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및 조업정지 명령	같은 법 제36조	시장·군수
	자.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 등	같은 법 제38조	
	차. 과징금 부과	같은 법 제37조	
	카. 사업자의 자가측정 결과 보고	같은 법 제39조제3항	
	3. 연료의 공급·판매·사용의 금지 또는 조치명령 등	같은 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4. 고체연료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 금지 및 고체연료 사용의 승인 등	같은 법 제42조	
	5. 청정연료의 사용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2 조·제43조	
	6.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규제 등	같은 법 제44조·제45 조	
	7. 보고 및 검사 등(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 2호부터 제5호까지	
	8. 청문(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같은 법 제85조	
	9. 과태료 부과 징수 등(위임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4조	
10. 오염물질 누출, 투기행위자에 대한 방제 조치 이행명령 및 대집행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3항·제4항		
11. 하천·호소 구역안 특정농작물의 경작 권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 제2항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환경 안전과	12. 하천·호소 수질오염 경보제 시행	같은 법 제21조제1항	시장·군수
	13. 오염된 공공수역 행위제한 권고에 따른 조치	같은 법 제21조의2	
	14.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시행계획 수립, 이행 평가 보고서 작성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항	
	15.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관한 다음의 사항(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나.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68조	
	다.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82조제2항	
	16.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따른 다음 사무		
	가.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24조의2	
	나. 안전관리 조치명령	같은 법 제25조제3항	
다. 보고 및 자료제출명령,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시료채취, 서류 및 시설 검사	같은 법 제29조제1항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 안전과	라. 청문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7조	시장·군수
맑은물 정책과	1. 공공하수처리시설(동 시설에 직접 연결된 차집관거 및 펌프장을 포함한다) 이외의 하수관거 설치인가 2. 공공하수처리시설외의 하수관거의 설치공사 등에 대한 공사중지·변경기타 필요한 조치명령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같은 법 제25조	시장·군수
산림 자원과	1. 산림기술자 배치 2. 청원 산림보호직원의 임용(도유림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에 관한 다음 사항(도유림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원의 배치 나. 직원배치 보류 중지 등 4. 보호수 관리 등에 관한 사항(경상북도 공유재산일 경우는 제외한다) 가. 보호수의 지정·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 에 관한 법률」 제5조제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 치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제6조 「산림보호법」 제13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산림 자원과	나. 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같은 법 제13조의2	시장·군수
	다. 보호수에 대한 행위제한	같은 법 제13조의3	
	라. 보호수의 지정해제	같은 법 제13조의4	
	마. 보호수 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13조의5	
	바.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같은 법 제13조의6	
	5.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다음의 권한(경상북도 공유재산일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산림보호법」 제7조	
	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의 고시 등	같은 법 제8조	
	다.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같은 법 제9조	
	라.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같은 법 제10조	
	마.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같은 법 제11조	
	6. 산지관리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환급 및 감면	「산지관리법」 제19조 및 제19조의2	
나. 재해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 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 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같은 법 제37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산림 자원과	다. 복구비의 예치 등	같은 법 제38조	시장·군수	
	라. 산지전용지 등의 중간복구 명령 및 복구 의무의 면제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3항		
	마.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같은 법 제40조		
	바. 복구 의무자 이의신청 접수	같은 법 제40조의2제4항		
	사. 복구의 대집행 등	같은 법 제41조		
	아.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	같은 법 제42조		
	자. 복구비의 반환 징수	같은 법 제43조		
	차.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같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카.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		
	타.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과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49조 및 제57조		
7. 산림사업법인에 관한 사항				
가.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변경등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산림자원과	<p>나. 산림사업법인의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록취소 등</p> <p>8.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p> <p>가. 임업후계자의 선발·지원 및 선발 취소</p> <p>나. 독립가(자영독립가만을 말한다)의 선정·지원 및 선정 취소</p>	<p>같은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p> <p>「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항</p> <p>같은 법 제17조 제2항·제3항</p>	시장·군수
산림산업관광과	가로수의 일반국도, 지방도(시의 읍·면, 군지역) 관리청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 고시」 제3조	시장·군수
아이세상 지원과 여성가족 행복과 사회복지 과 어르신 복지과 장애인 복지과 보건 정책과 공통사항	<p>1.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인가(법인의 설립 목적과 주요사업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p> <p>2.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임면보고의 접수</p> <p>3. 사회복지법인 감사의 추천</p> <p>4.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의 선임</p> <p>5.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허가</p>	<p>「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p> <p>같은 법 제18조제6항 및 제52조제1항</p> <p>같은 법 제18조제7항 및 제52조제1항</p> <p>같은 법 제22조의3제1항·제3항 및 제52조제1항</p> <p>같은 법 제23조제3항 및 제52조제1항</p>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6. 사회복지법인 재산취득 보고의 접수	같은 법 제24조 및 제52조제1항	
보건 정책과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지도와 명령	「의료법」 제59조제1항	시장·군수
식품 의약과	1. 의약품 등 제조업자의 영업소 등록 2. 의약품 등 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 허가 등 3. 의약품 등 판매업의 허가증 갱신·재발급, 반납 4. 약종상, 한약종상, 매약상의 허가증 교부, 허가대장 비치 영업소의 이전 허가 5. 마약류 도매업자의 판매 제한자에 대한 판매승인 6.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7. 마약취급자의 명부등재 및 허가증 등의 교부·재교부 8. 동 휴·폐업 신고 및 재개업 신고 9.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10. 마약류취급 자격상실자의 양도 승인	「약사법」 제31조제5항 「약사법」 제45조제1항 「약사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00조 및 제103조 「약사법」 (법률 제1491호) 부칙 제4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식품의약품	11. 마약류취급업무 허가·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 12. 마약류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 등 신고 수리 13. 마약취급자 명부에 관련사항 기재 1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에 따른 협의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8조제3항 같은 법 제8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시장·군수
도시계획과	1.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중 법 제16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 권한 가. 실시계획 승인 나.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다.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협의 라.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협의 마. 국·공유재산의 용도 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바.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준공검사 및 공고, 보완시공 등 조치명령 사. 준공인가 전 사용 사전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 같은 법 제21조제2항 같은 법 제26조제3항 같은 법 제27조제2항 같은 법 제3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법 제37조제8항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p>아.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 협의 및 승인</p> <p>자. 사업시행자의 업무에 대한 보고지시 및 검사</p> <p>차.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 처분 및 청문·고시(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권한에 관한 경우로 한정한다)</p> <p>카. 법 제13조의4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변경</p> <p>타. 산업단지계획 경미한 변경 중 다음 사항에 대한 변경의 의견청취, 협의, 승인 및 고시</p> <p>1)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p> <p>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p> <p>3)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따른 사업시행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정정하는 경우</p> <p>4) 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그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p>	<p>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0항</p> <p>같은 법 제47조제1항</p> <p>같은 법 제48조</p> <p>같은 법 제16조</p> <p>「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제10조 및 제15조</p>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p>5) 토지이용계획 변경 없이 주요 유치 업종(제한업종) 및 업종별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p> <p>6)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p> <p>2.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에 관한 다음 권한</p> <p>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p> <p>나.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p> <p>다. 산업용지의 매각·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p> <p>라.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지식산업센터 그 밖의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p> <p>마.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전기·증기·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p> <p>바.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에 관한 업무</p>	<p>「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p> <p>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p> <p>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p> <p>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p> <p>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5호</p> <p>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6호</p>	<p>시장·군수</p> <p>시장·군수 (「경상북도 사무위탁조례」 제2조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제5항에 따른산업단지에는제외한다)</p>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사.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 1항제7호	시장·군수
	아.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 1항제8호	
	자.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 1항제9호	
	차. 산업단지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 1항제10호	
	카. 기타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지원에 필요한 업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 1항제11호	
	3. 대도시에 대한 특례 법 적용 이전에 도지사가 지정한 산업단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포항시-영일만, 영일만2)	「지방자치법」 제175조	
	가. 지정(개발계획) 변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 제7조제2항	
	나. 산업단지 지정 등의 고시 등	같은 법 제7조의4	
	다.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3조제3항	
	라. 산업단지의 전환	같은 법 제13조의2	
	마.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6조	
	바. 실시계획(변경)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제3항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사.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및 관계 서류 사본의 송부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	시장·군수
	아.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협의 등	같은 법 제21조제2항	
	자.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의견 청취	같은 법 제26조제3항	
	차.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같은 법 제27조제2항	
	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의뢰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2항	
	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공고 및 통지	같은 법 제37조제5항	
	파.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같은 법 제37조제8항	
	하.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47조제1항	
	거.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처분·청문 및 고시	같은 법 제48조	
	4. 도시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 중 다음 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및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가. 도로(중로 이하,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관련 법상 도로관리청이 시장·군수인 도로에 한정한다) 나. 학교(고등학교 이하) 다. 공원(어린이공원, 소공원, 2만㎡ 미만 규모의 공원으로 한정한다) 라. 주차장 마. 궤도 바. 시장 사. 공공청사 아. 수도공급설비 자. 하수도 차. 도축장 카. 방풍설비 타. 사방설비 파. 방화설비 하. 방조설비 거. 연구시설 너. 문화시설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더. 사회복지시설 러. 공공직업훈련시설 머.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버. 광장(교통광장은 중로 이하의 도로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관련법상 도로관리청이 시장·군수인 도로에 접한 광장으로 한정한다) 서. 하천(「소하천정비법」상 소하천으로 한다) 어. 공공공지 저. 전기공급설비 처. 장사시설 커. 저수지 터. 가스공급설비 퍼. 방수설비 혀. 유수지 고. 폐차장 노. 청소년수련시설 도. 체육시설(9홀 이상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및 종합운동장은 제외한다)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시설 모. 자동차정류장 보. 열공급설비 소. 방송·통신시설 오. 공동구 조.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초. 종합의료시설 코. 수질오염방지시설 토.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5. 경미한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한다)의 변경결정 및 고시 6.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7.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 8.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고시 9.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변경, 폐지를 포함한다) · 고시· 협의권 및 서류의 공람	같은 법 제30조제5항· 제6항 같은 법 제48조, 제88 조제9항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88조, 제90 조부터 제92조까지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10. 준공검사 필증교부, 공사완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및 공고와 협의권	같은 법 제98조	시장·군수
	11. 도시개발구역과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고시	「도시개발법」 제4조, 제9 조	
	12.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신청기간의 연장	같은 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13. 도시개발사업의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는 권한	같은 법 제11조	
	14.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신탁개발 승인	같은 법 제12조	
	15.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 인가의 고시, 실시계획의 협의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 조	
	16.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같은 법 제20조	
	17. 선수금 승인	같은 법 제25조	
	18.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제출 받을 권한	같은 법 제26조	
	19.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 검사 참여 요청	같은 법 제50조	
	20.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 필증의 교부, 보완시공 등의 조치	같은 법 제51조	
	21. 준공검사에 따른 협의	같은 법 제52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22. 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허가	같은 법 제53조	시장·군수
	23.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권한	같은 법 제59조	
	24.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공공 시설의 관리청과의 협의 및 통보	같은 법 제66조	
	24.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공공 시설의 관리청과의 협의 및 통보	같은 법 제69조	
	26. 보고 및 자료의 제출 요구, 업무 및 회계의 검사	같은 법 제74조	
	27.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조치	같은 법 제75조	
	28. 청문 실시	같은 법 제76조	
	29. 도시공원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과 그에 따른 고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30.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	같은 법 제17조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 권한 및 위임된 사무 중 협의로써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을 의제 하는 사무에 대한 협의(용도 지역·지구·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협의는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139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3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시송달 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4조	시장·군수
	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시·군에 위임된 사무로 한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34.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인가 (시장·군수 시행사업을 제외한다) 및 변경인가	「도시개발법」(법률 제 8970호) 부칙 제6조, 구 「도시개발법」(법률 제 6853호) 부칙 제2조에 따른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제 47조 및 제55조	
	35.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보고, 공고	같은 법 제61조	
	36.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부담금 및 보조금 등의 집행잔액 사용인가	같은 법 제76조의2	
	37. 감독 및 감사 등	같은 법 제77조 제1항 및 제2항, 제78조	
	38.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330만㎡미만 사업으로 한정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39.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공공기관 외의 시행자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16조	
	40. 선수금의 수령 및 채권발행 승인	같은 법 제20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41. 감독(지정 또는 승인취소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3조제1항	시장·군수
	42. 자료제출 및 보고받을 권한	같은 법 제24조	
도 로 철 도 과	1. 도로점용 등(국토교통부장관 관리 도로는 제외한다)	「도로법」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 제66조,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 및 제74조	시장·군수
	2. 권한의 위임·위탁	같은 법 제110조	
	3.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같은 법 제96조	
	4. 공익을 위한 처분	같은 법 제97조	
	5. 지방도상 타 공작물의 공사시행	같은 법 제33조	
	6. 지방도상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같은 법 제35조	
	7. 지방도상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같은 법 제40조	
	8. 지방도의 도로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같은 법 제45조 및 제46조	
	9. 지방도의 공사와 유지·관리 등	같은 법 제31조	
	10.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100조	
	11. 재해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같은 법 제83조	
	12. 건설기계 등록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로 철 도 과	13.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같은 법 제5조	시장·군수	
	14. 등록의 말소	같은 법 제6조		
	15. 건설기계 등록원부 보관	같은 법 제7조		
	16. 지방도에 관한 다음 사항			
	가. 공사 및 유지를 위한 타인 토지의 출입과 사용 및 장애물 제거	「도로법」 제81조		
	나. 지방도 폐도관리, 용도변경 또는 폐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8조		
	다. 지방도 폐도에 대한사용, 수익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제20조		시장·군수
	17. 도가 시행하는 지방도로사업 편입용지 등에 대한 보상업무 중 다음의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81조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같은 법 제14조		
	나. 보상계획의 열람 등	같은 법 제15조		
	다. 협의	같은 법 제16조		
	라. 계약의 체결	같은 법 제17조		
	마. 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재평가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 조 및 제17조		
	바. 보상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44조의2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로 철 도 과	사. 편입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	「부동산등기법」 제27조 및 제28조	시장·군수
	18. 미불용지의 평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19. 등록번호표 봉인 등의 통지 및 등록번호표 재부착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 조, 제18조	
	20. 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같은 법 제17조	
	21. 등록번호표 반납	같은 법 제9조	
	22. 건설기계 등록번호의 훼손금지 및 새김명령 등	같은 법 제10조, 제11조	
	23. 건설기계의 폐기	같은 법 제25조의2	
	24.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같은 법 제34조의2	
	25. 건설기계 과태료처분 및 청문, 행정처분, 보고검사 등	같은 법 제35조, 제35 조의2, 제36조 및 제44 조	
	26. 지방도 교차방법과 다른시설의 연결	「도로법」 제51조 및 제52 조	
	27. 원인자 부담금	같은 법 제91조	
	28. 수수료의 징수	같은 법 제103조	
	29. 과오납금 반환	같은 법 제94조	
	30. 변상금의 징수	같은 법 제72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로 철 도 과	31. 과태료 32. 도유재산 관리에 대한 다음의 사항 가. 도유재산(행정, 일반)의 실태조사 나. 도유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33. 건설기계 검사 등	같은 법 제11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및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같은 법 제20조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시장·군수
건 축 디 자 인	1. 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2. 주택건설사업의 착공신고서 처리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다음 권한 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에 제작·표시·설치되는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나. 2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를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에 제작·표시·설치되는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제16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2제1호 같은 법 제3조의2제2호	시장·군수
하 천 과	1. 하천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 의무의 승계 신고	「하천법」 제5조제2항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하 천 과	2. 하천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수 등의 기준	같은 법 제13조	시장·군수
	3. 하천시설의 관리규정	같은 법 제14조	
	4. 하천수의 사용·관리 및 기록 보관	같은 법 제52조	
	5.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하천관리청이 직접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유지 보수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7조	
	6. 하천관리청이 아닌자의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 관리	같은 법 제30조	
	7. 하천의 점용 허가(법 제33조제1항 제3호의 공작물중 교량(세월교를 포함한다) 취입보, 하천 복개는 제외한다) 및 고시	같은 법 제33조	
	8. 동 점용하천의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의 대행	같은 법 제36조	
	9. 동 점용료 등의 징수(국가하천의 점용료 사용료 징수를 포함한다) 및 감면	같은 법 제37조	
	10. 지방하천 예정지 등에서의 행위 제한	같은 법 제39조	
	11.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같은 법 제67조	
	12.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같은 법 제69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하 천 과	13. 같은 법에 의한 허가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공익을 위한 처분이나 조치명령	같은 법 제70조	시장·군수
	14. 하천관리원 임명, 위반사항조치명령 권한	같은 법 제72조 및 「청원경찰법」 제5조제1항	
	15. 같은 법에 필요한 보고, 출입, 검사의 권한	같은 법 제90조	
	16. 동 하천관리를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사용, 장애물의 변경, 제거	같은 법 제75조	
	17.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지정 및 고시	같은 법 제46조	
	18. 하천의 사용 금지 및 공고	같은 법 제47조	
	19. 동 원상회복, 면제, 비용의 예치	같은 법 제49조	
	20. 도가 시행하는 하천사업 편입용지 등에 대한 보상업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1. 같은 법에 의한 폐천부지 등의 고시	「하천법」 제84조	
	22. 같은 법에 의한 청문의 실시	같은 법 제91조	
	23. 지방하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9조	
	가. 제75조제2항 위반 타인토지 출입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하 천 과	<p>나. 제46조제6호 및 7호 위반행위</p> <p>다. 제5조제2항 신고의무 위반</p> <p>라.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 위반</p> <p>마. 제75조제1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등에 대한 거부·방해</p> <p>24. 도유 일반재산의 처분「하천법」 제85조에 따라 규정에 의거 양여받은 폐천부지로 한정한다</p> <p>25.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변경 계획 수립</p> <p>가. 보상청구</p> <p>나. 보상대상자의 결정</p> <p>다. 보상금액의 산정</p> <p>라. 보상금 지급의 통지</p>	<p>「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p> <p>「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관한 법률」 제41조제2항</p> <p>같은 법 시행령 제3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4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7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8조</p>	시장·군수
에 너 지 산 업 과	<p>1.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무 중 다음에 관한 권한</p> <p>가. 에너지다소비업자의 신고 등</p> <p>나.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 검사 등</p> <p>다.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면제 등</p>	<p>「에너지이용합리화법」</p> <p>같은 법 제31조제1항</p> <p>같은 법 제39조제5항</p> <p>같은 법 제39조제6항·제7항</p>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에너지 산업과	<p>라.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해임 신고 등</p> <p>마. 에너지업무의 보고 및 검사 등</p> <p>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무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p> <p>2. 전기설비의 기술기준 적합 명령</p> <p>3.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자 선정</p>	<p>같은 법 제40조제3항·제4항</p> <p>같은 법 제66조제1항</p> <p>같은 법 제78조</p> <p>「전기사업법」 제71조</p> <p>「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p>	시장·군수
해양 수산과	해양수산부의 예산지원으로 도지사가 시설한 수산시설의 관리책임 등	「해양수산 보조 및 용자 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제32조	시장·군수

【별표 5】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제5항 관련)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투 자 유 치 실	1. 외국인 투자지역의 관리에 관한 권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4항, 같은 법시행령 제26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관 광 정 책 과	1. 관광(단)지의 지정 등 가.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나. 관광(단)지 지정 협의 다. 관광(단)지 지정 취소 또는 면적변경 라. 관광(단)지 지정 고시 2. 관광지 지정을 위한 해당지역 조사측량 실시 3.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등 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나.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변경 다. 조성계획 승인(변경) 협의 4. 관광지 조성계획승인 전 사업시행자의 토지 매입 승인 5. 관광지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관광진흥법」 제52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54조 같은 법 제55조 같은 법 제56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관 광 정책과	가.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승인 취소 및 개선 명령 나. 조성계획 승인신청 또는 사업 착수기한 연장 다. 관광(단)지 지정 실효 및 취소 고시		
체 육 진흥과	1. 체육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나.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다. 등록체육시설업 회원모집 계획서 수리 라. 체육시설업 등록(조건부 등록), 변경등록 마.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관계 기관간 협의, 승인취소 통보 바. 시정명령 사. 체육시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아. 등록체육시설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의 폐쇄명령, 영업정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2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체 육 진흥과	자. 청문실시 차.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40조	
환 경 정책과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선명령 나.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징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제16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환 경 안전과	1.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2. 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다.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미준수 사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3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 안전과	라. 조치명령 미이행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 정지 명령	같은 법 제32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4호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시설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5호	
	바.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6호	
	사.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7호	
	아.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명령 및 조업 명령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8호	
	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9호	
	차.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0호	
	카. 개선계획서의 접수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제4항, 제63조제1항제16호	
	타. 사업자의 자가측정 결과 보고	같은 법 제39조제3항	
	3. 연료용 유류 등에 대한 대기 오염물질 배출규제에 관한 권한		
	가. 황 함유기준 초과하는 연료의 공급·판매 사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금지 등 필요한 조치명령	같은 법 제41조제4항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환경 안전과	나. 연료의 제조·판매·사용금지 등 조치 명령	같은 법 제42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다. 이행완료보고서 접수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라. 고체연료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항	
	마.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 수리, 고체연료 사용승인서 발급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3항	
	바. 청정연료 외의 연료에 대한 사용금지 명령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사. 청정연료의 사용대상 시설에 대한 연료용 유류의 공급 또는 판매금지 명령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아. 과태료 부과징수 등	같은 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4.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환경부장관 관할사업장은 제외)		
	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신고·변경신고 수리, 신고증명서 발급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부터 제6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59조	
	나.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명령	같은 법 제44조제7항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환 경 안 전 과	<p>다. 기존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수리</p> <p>라. 조치기간 연장 승인</p> <p>마. 같은 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 제7호 또는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검사</p> <p>바. 청문</p> <p>5.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보고명령, 자료제출 요구, 출입, 채취, 검사(사업자 제외)</p> <p>나. 청문</p> <p>다. 과태료의 부과징수</p> <p>6.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 및 통지</p> <p>7.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 및 등록</p>	<p>같은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p> <p>같은 법 제45조제4항</p> <p>같은 법 제82조</p> <p>같은 법 제85조</p> <p>같은 법 제82조제1항부터 제3호,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2호· 제13호</p> <p>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4호</p> <p>같은 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5호</p> <p>「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27조</p> <p>「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6조</p>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보 건 정 책 과	1.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부속병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보건 정책과	가. 개설허가 및 개설장소 이전·개설에 관한신고 또는 허가사항 변경 허가 나. 의료보수의 신고	「의료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8조 같은 법 제45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식품 의약과	1. 마약류 도·소매업자, 의료업자, 마약류 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변경)·지정 나.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지정 다. 허가증, 지정서의 교부 및 재교부 라. 마약류취급자의 폐업·휴업·재개업신고 마. 마약류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가 된 때 및 법인이 해산한 경우 신고 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교부 사. 사고 마약류의 처리 아.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 같은 법 제7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같은 법 제8조제3항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식품 의약과	자. 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 등 판매승인	같은 법 제26조제1항, 제2항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차. 마약의 도매보고	같은 법 제27조	
	카. 마약의 소매보고	같은 법 제29조	
	타.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인수신고	같은 법 제33조제2항	
	파. 허가 등의 제한	같은 법 제37조	
	하. 출입·검사와 수거	같은 법 제41조	
	거. 폐기 명령 등	같은 법 제42조	
	너. 업무보고 등	같은 법 제43조	
	더.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같은 법 제44조	
	러. 청문	같은 법 제45조	
	머.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46조	
	2.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약품 판매업 허가, 변경허가	「약사법」 제45조	
	나. 의약품도매상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다. 보고 지시와 검사	같은 법 제69조	
	라. 업무 개시 명령 등	같은 법 제71조제1항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식품 의약과	마. 폐기 명령 등 바. 검사명령 사. 개수명령 자.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명령 차. 청문 카. 약사감시원 등 임명 타. 허가증 갱신 파. 과징금 부과징수 하.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6조제1항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제78조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98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도시 계획과	1.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변경) 및 고시, 협의 권한 나.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승인 및 고시 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48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 계획인가(변경, 폐지포함), 고시, 협의권한 및 서류의 공람	같은 법 제88조, 제90조부터 제92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준공 검사 및 준공 검사 필증교부, 공사완료 공고와 협의권한	같은 법 제98조	
	3. 도시공원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및 고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4.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포함) 및 고시, 협의 권한	「도시개발법」 제3조, 4조, 제9조	
	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신청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개최(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같은 법 제7조	
	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및 고시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라. 도시개발사업의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는 권한	같은 법 제11조제3항	
	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기간의 연장	같은 법 제11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바.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신탁개발 승인	같은 법 제12조제4항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사. 조합설립의 인가(변경)	같은 법 제13조	
	아.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고시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자. 선수금 승인	같은 법 제25조	
	차.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제출받을 권한	같은 법 제26조	
	카. 환지계획의 인가(변경)	같은 법 제29조	
	타. 청산금의 징수위탁 수행	같은 법 제46조	
	파.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참여요청	같은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	
	하.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 필증의 교부, 보완시공 등의 조치	같은 법 제51조	
	거. 준공검사에 따른 협의	같은 법 제52조제3항	
	너. 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허가	같은 법 제53조	
	더.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기반 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권한	같은 법 제58조제1·3·4항	
	러.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공공 시설의 관리청과의 협의 및 통보	같은 법 제66조제3항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머.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버. 보고 및 자료의 제출 요구, 업무 및 회계의 검사 서.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조치 어. 청문 실시 5.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산업단지 및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중 다음의 권한 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나.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전환 및 고시 다. 실시계획 협의, 승인 및 고시 라.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협의 마. 국·공유재산의 용도 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바. 준공검사, 준공검사를 위한 검사 의뢰, 보완시공 등 조치명령, 준공인가 및 공고	같은 법 제68조제2항 같은 법 제74조제1항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76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같은 법 제13조, 제13조의2 같은 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의2제1항, 제21조제2항 같은 법 제26조제3항 같은 법 제27조제2항 같은 법 제37조제2항부터 제5항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사.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 물의 준공 인가 전 사용승인	같은 법 제37조제8항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아.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의 처분합의	같은 법 제38조	
	자.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38조의4	
	차.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16조	
	카.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47조	
	타.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 처분 및 청문고시	같은 법 제48조	
	파. 산업단지계획의 의견청취, 협의, 승인 및 고시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제10조, 제15조	
	6. 기초조사의 실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	
	7. 국가산업단지 지정협의	같은 법 제6조제3항	
	8.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산업 단지 및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중 다음의 권한		
	가. 산업단지 관리권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시 계획과	<p>나.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설립인가 및 설립 인가 취소</p> <p>다. 관리업무의 위임·위탁</p> <p>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협의, 승인, 고시 및 운영</p> <p>마. 입주계약의 체결 및 해지</p> <p>바.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p> <p>사.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보고, 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p> <p>아. 과태료의 부과징수</p> <p>9.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p> <p>10.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p>	<p>같은 법 제31조제2항, 제5항</p> <p>같은 법 제31조제1항</p> <p>같은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 제33조의2제3항</p> <p>같은 법 제38조, 제42조</p> <p>같은 법 제43조의3</p> <p>같은 법 제48조</p> <p>같은 법 제55조제3항</p> <p>「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p>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p>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건축디 자인과	<p>1.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사업계획의 승인</p> <p>나.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협의</p> <p>다.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p>	<p>「주택법」 제16조</p> <p>같은 법 제17조</p> <p>같은 법 제19조</p>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건축디자인과	라. 주택의 감리 등 마. 부실감리자에 대한 조치 바. 공유지 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 2.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4조의3 같은 법 제25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토지정보과	1. 지적관리를 위한 다음의 권한 가. 지번변경의 승인 나. 지정공부의 반출 승인 다. 지정공부의 복구 라. 도면의 재작성 승인 마.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활용에 관한 승인 바. 축척변경의 승인 사.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아.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관리 자.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교부	「지적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에너지 산업과	<p>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p> <p>가. 허가 및 변경허가</p> <p>나. 허가의 세부기준 설정</p> <p>다. 사업의 휴지 등 신고의 수리</p> <p>라. 사업자 등의 지위승계 등의 신고수리</p> <p>마.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또는 제한명령</p> <p>바. 과징금의 부과·징수</p> <p>사. 안전관리규정 수리 및 변경명령, 확인·평가</p> <p>아. 안전관리 선임·해임·퇴직 사실 신고 수리, 선임기간 연장승인, 해임요구</p> <p>자. 위해방지 조치명령, 시설 등의 이전·사용정지 또는 사용 제한명령, 시설 등의 안에 있는 액화석유가스 폐기 명령, 시설 등의 봉인</p> <p>차.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집단공급 사업자, 판매 사업자에 대한 가스의 수급 및 안전 확보상 필요한 조정명령</p>	<p>「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제3조</p> <p>같은 법 제4조</p> <p>같은 법 제7조</p> <p>같은 법 제8조제3항</p> <p>같은 법 제9조</p> <p>같은 법 제10조</p> <p>같은 법 제12조</p> <p>같은 법 제16조</p> <p>같은 법 제29조</p> <p>같은 법 제34조</p>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에너지 산업과	카. 업무에 관한보고 또는 서류 제출 명령 및 시설·용기· 용품·장부·서류 기타물건 조사	같은 법 제38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타. 청문	같은 법 제40조	
	파. 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52조	
	2. 석유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및 부생연료유 판매소는 제외한다)		
	가. 석유판매업의 등록·신고 및 변경등록· 신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나. 조건부 등록 및 취소	같은 법 제11조	
	다. 사업의 개시·휴업 및 해업의 신고	같은 법 제12조제2항	
	라. 등록의 취소 및 정지명령	같은 법 제13조제3항	
	마. 과징금 부과·징수	같은 법 제14조	
	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 ·운송·사용의 중지명령, 제조장·판매소·저장시설의 폐쇄·철거명령 및 대집행	같은 법 제30조	
사. 보고명령 및 검사·시료채취	같은 법 제40조		
아. 청문	같은 법 제49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에너지 산업과	자. 과태료 부과·징수(유사석유 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9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3. 석유대체연료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석유대체 연료대리점은 제외한다)		
	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같은 법 제33조	
	나. 등록의 취소 및 정지명령	같은 법 제34조	
	다. 과징금 부과·징수	같은 법 제35조	
	라. 보고명령 및 검사·시료채취	같은 법 제38조	
	마. 청문	같은 법 제40조	
	바.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49조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용기, 냉동기, 특정시설의 제조등록 및 변경등록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	
	나. 허가·등록의 취소 등의 처분	같은 법 제9조	
	다. 과징금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9조의2	
	라. 안전관리규정 변경 명령	같은 법 제11조제4항	
	마. 안전성 향상계획 변경 명령	같은 법 제13조의2제2항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에너지 산업과	바. 안전관리자의 선·해임신고 수리	같은 법 제15조제3항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사. 안전관리자의 해임요구	같은 법 제15조제6항	
	아. 기술자격의 취소, 정지 요청	같은 법 제15조제7항	
	자. 완성검사	같은 법 제16조제3항	
	차. 임시사용 허가	같은 법 제16조제4항	
	카. 용기 등의 검사	같은 법 제17조	
	타. 용기 등의 품질보장 등	같은 법 제18조	
	파. 위해 방지조치 등	같은 법 제24조	
	하. 청문	같은 법 제35조의3	
5.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 대리점 및 부생 연료유판매소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 중 석유 판매 업자가 판매하는 석유 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의 공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7항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공공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1년 7월 15일

경상북도 조례 제4528호

경상북도 공공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각종 정책 또는 사업, 자치법규 제정·개정을 말한다.
2. “갈등”이란 도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 전반의 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행할 때 이해관계인, 도민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원활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도내 공공정책으로 도와 도민 또는 도민과 도에 소재하는 기관·단체 등의 갈등으로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갈등의 예방과 조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갈등영향분석) ① 도지사는 공공정책 수행 시 도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도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갈등영향분석 결과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갈등영향분석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갈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북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갈등 예방·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도 및 시·군과 주민간의 갈등 사항 등 갈등관리 대상 사업 등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3. 갈등영향분석서 심의에 관한 사항
4. 갈등관리 방식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갈등의 예방·관리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 갈등관리 업무 담당 국장
2.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3. 경상북도의회 의원
4. 갈등관리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의 대표
5. 갈등관리 예방과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관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손해사정이나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용역·법률자문 또는 감정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제9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심의결과의 반영)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추진과정
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해당 사
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도, 시·군 소속 공무원과 당사자 및 전문가로 한다.

④ 협의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
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명 또는 여러 명을 대표 당사
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시 협의회 위원 간 합의에 의
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5조(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합의결과는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지사는 합의결과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갈등관리 사업 등) ① 도지사는 갈등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
2. 갈등관리 과정과 관련된 매뉴얼 작성·보급
3. 갈등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공공정책 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는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 ① 도지사는 공공정책에 대한 각 부서의 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에게 갈등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 실·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갈등: 즉시

2. 발생한 갈등의 관리 현황: 매년 하반기 중

3. 그 밖에 갈등예방 및 진단에 필요한 사항: 수시

③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제출받은 실장·국장은 갈등 전담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갈등의 예방, 진단, 조정 및 교육·훈련 등 갈등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군,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갈등의 예방 및 조정을 위하여 도내 시·군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 의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 관계자는 갈등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 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1년 7월 15일

경상북도 조례 제4529호

경상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북도민으로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정신을 기리고 그 역사적 교훈을 도민에게 바로 알리고 후대에 올바르게 계승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경상북도에서 일어난 4·19혁명,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념사업)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민의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정신을 기리고 민주화운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경북지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경북지역 민주화운동의 기념과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위탁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1년 7월 15일

경상북도 조례 제4530호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상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제36조제1항에 의거 경북도립대학교(이하“대학교”라 한다)”를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른 경북도립대학교”로 하고,

제2조 중 “대학교”를 “경북도립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추가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1년 7월 15일

경상북도 조례 제4531호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양성평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1년 7월 15일

경상북도 조례 제4532호

경상북도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인 선비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선비정신을 통하여 인성함양 및 건전한 도민 의식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선비문화”란 학식이 있고 행동과 예절이 바르며 의리와 원칙을 지키고 관직과 재물을 탐내지 않는 고결한 인품을 지닌 선비의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선비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선비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경상북도 선비문화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비문화 진흥 사업 기본방향 및 목표
2. 선비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선비문화 진흥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4. 선비문화 진흥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선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선비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선비문화 계승·발전사업
2. 선비문화 체험·연수·교육사업
3. 선비문화 연구·개발 사업
4. 선비문화 유적 및 시설의 정비보전 및 관광자원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선비문화 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선비문화 진흥 관련 주요 현안 사항
2. 선비문화 활용 촉진 및 문화관광 자원화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3. 선비문화 계승·발전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제7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소관분야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선비문화 관련 대학교수 및 문화재 전문가
3. 선비문화 관련 시·군 부단체장

③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선비문화 진흥을 위해 선비문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선비문화 진흥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1년 7월 15일

경상북도 조례 제4533호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으로 경상북도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2. “스마트관광”이란 개인이 어떤 곳을 관광할 때 의사소통이나 현지정보와 같은 문제를 스마트폰과 모바일 기술을 이용하여 해결해 가는 관광을 말한다.
3. “스마트관광사업”이란 관광요소와 기술요소의 융·복합을 통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경험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관광생태계 조성

과 스마트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관광진흥계획 수립) 도지사는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상북도 스마트관광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스마트관광 여건과 스마트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스마트관광의 비전과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관광객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스마트관광을 위한 자원확보에 관한 사항
6.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7. 스마트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8.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스마트관광사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에 관한 사업
3. 스마트관광을 이용한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스마트관광통계) ①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스마트관광 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스마트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스마트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민간참여 확대) 도지사는 스마트관광생태계가 원활하게 조성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대기업, 중소기업 등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 갖춘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도의 스마트관광 진흥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1년 7월 15일

경상북도 조례 제4534호

경상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

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5.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가. 폐기물의 수집, 분리, 선별, 파쇄, 압축, 추출 등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활동
 -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6. “자원순환산업”이란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연구, 개발하는 산업으로서 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업종(業種)의 산업을 말한다.
7. “자원순환시설”이란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거나 폐기물을 활용하여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물질 또는 물건을 생산, 가공, 조립, 정비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 장비, 설비 등으로서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이 조례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2.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하여야 한다.
3.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하여야 한다.

4.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원료·재료·용기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하며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원순환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자원순환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5년마다 자원순환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연도별 자원순환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계획과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3.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4.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7.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8.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9. 자원순환산업의 육성방안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원순환 통계조사)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기관 장 등이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자원순환 성과관리)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와 도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이행실적을 반영하여 해당 시·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용도) 도지사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지급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이하 “징수교부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운영
5.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 및 처분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7. 시·군에 대한 폐기물 분리배출·수거·재활용 지원 사업
8. 순환자원을 생산·유통·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9. 재활용 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제10조(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활용) ① 도지사는 징수교부금을 제9조 각 호에 따른 용도의 범위에서 시·군 및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시장, 군수 및 사업자 등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편성 전까지 대상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을 위해 도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3.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자원순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경상북도 자원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폐기물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4. 자원순환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자연순환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연순환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 의원
2.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 자원순환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6조(교육) 도지사는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도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등)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1년 7월 15일

경상북도 조례 제4535호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개인 또는 단체”를 “개인, 단체, 운반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운반업자”란 배출지에서 영농폐기물을 직접 수거 운반하는 사람(「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그 밖에 도지사가 영농폐기물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급대상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해양공간 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1년 7월 15일

경상북도 조례 제4536호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며, 경상북도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제3조(지역위원회 설치 및 기능)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등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역위원회 구성 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경상북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
2. 해양공간계획과 관련 있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 해양공간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지역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도지사가 관리계획의 수립·변경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에서 논의할 사안에 대하여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미리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등) ① 지역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리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3장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제9조(지역협의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변경을 위해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해양공간 관련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2. 해양용도구역 지정·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양공간특성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협의회 위원장이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및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역협의회 구성 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리계획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할 사람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에서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재직 한 사람
5.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을 주로 하는 기업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재직 또는 활동한 사람

6. 그 밖에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그 밖에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지역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지역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관리계획 수립·변경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역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에서 관련 업무수행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에서 논의할 사안에 대하여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미리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배타적경제수역의 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지역협의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인근 배타적경제수역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4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활용 등) 도지사는 지역협의회에서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참관인) 지역협의회 위원이 아닌 지역주민, 관련 이해관계자는 지역협의회에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위원의 동의 및 위원장의 지명을 거쳐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지역위원회의 준용) 지역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간사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위원회”는 “지역협의회”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1년 7월 15일

경상북도 조례 제4537호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및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방사능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4. “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5. “어업인 단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어업인 단체(산하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어업인등”이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물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어업인등이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60조제2항 따라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물 안전성 실태 및 현황
2. 수산물 안전성 향상 방향 및 목표

3.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4. 수산물 안전을 위한 투자계획
5. 수산물 안전성조사(법 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중 수산물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6. 수산물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7. 수산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어업인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어업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양식장 현대화 및 시설 개·보수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설·기자재
3. 무항생제 등 안전한 수산식품 생산지원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을 수행하는 어업인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직거래, 소비, 홍보, 원산지 조사
2. 안전한 수산물 생산 교육
3. 어업인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
4.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인증) ① 도지사는 수산물 안전성 확보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안전한 양식장”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안전한 양식장” 인증을 위하여 해마다 자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생산단계 양식장으로부터 인증서 신청을 받아 최근 3년 동안 법 제61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안전한 양식장” 인증서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인증 절차에 따라 매년 갱신 신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안전한 양식장” 인증을 위한 절차와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인증 취소 등) ① 도지사는 “안전한 양식장”으로 인증을 받은 양식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61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2. 수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어업면허·허가 취소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
3. 폐업, 전업 등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증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가 재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9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인증을 받은 양식장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인증을 받은 양식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등) 도지사는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 공급에 기여한 공이 있는 개인 및 단체를 포상하고 이들에게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화훼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1년 7월 15일

경상북도 조례 제4538호

경상북도 화훼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화훼산업의 발전과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경상북도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
2.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3.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자원 확보 및 지원
4. 화훼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지원) 도지사는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 기반시설 조성
2. 화훼의 생활화, 이용 촉진 및 유통 지원
3. 화훼산업 박람회
4. 화훼 관련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보급
5. 화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6. 화훼산업 진흥지역 조성
7. 화훼산업 관련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8. 화훼산업 관련 교육훈련
9. 그 밖에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1년 7월 15일

경상북도 조례 제4539호

경상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경상북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란 식품 및 농수축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지역 먹거리”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도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4.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생산·제조·가공한 지역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는 유통체계가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5. “먹거리 보장”이란 먹거리 기본권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먹거리를 물리적·경제적·사회적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먹거리 종합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정책 대상자로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먹거리 정책을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권리와 역할) ① 도민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먹거리를 자유롭게 적절하게 섭취할 권리를 갖는다.

② 도민은 먹거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용이하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

③ 도민은 합리적인 먹거리 소비를 통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에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먹거리 정책의 기본내용 및 추진방향

2.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재원의 조달방안 및 규모

4. 관련 제도 개선

5. 먹거리 정책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먹거리 정책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먹거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먹거리 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 및 확대 발전을 위하여 경상북도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먹거리 보장 및 안전

2. 먹거리 선순환 체계

3. 먹거리 정책의 조정·통합

4.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먹거리 시행계획의 이행 및 평가

6. 먹거리 정책 지표 설정
7. 먹거리 정책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및 관련 사업 추진
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먹거리 기본권 관련 도 업무담당 실·국장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경상북도교육청 먹거리업무 담당 국장
4. 지역 먹거리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대표
5.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및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홍보) ① 도지사는 도민의 먹거리에 대한 인식개선과 선택 역량 강화를 위하여 먹거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먹거리 안전,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등 정책 전반에 관해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1년 7월 15일

경상북도 조례 제4540호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4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도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제3조(도심리지원단 구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심리지원단을 당연직 단원(이하 “당연직”으로 한다)과 위촉직 단원(이하 “위촉직”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재난심리, 정신건강, 재해구호기금 담당 부서, 소

방본부 등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심리회복지원과 관련 있는 지방 소재 행정기관(도교육청, 도경찰청을 포함한다)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③ 위촉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및 도내에 소재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2. 심리회복지원과 관련이 있는 학회나 협회 임직원
3. 심리회복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④ 위촉직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단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⑤ 신규로 위촉된 단원은 회의에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회의에 대한 모든 직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대표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개최) ① 도심리지원단의 심리회복지원을 위한 회의는 단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단장을 포함한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단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회의 간사) 간사는 심리회복지원 업무담당 사무관이 하며, 단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심의안건의 정리 및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2.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3. 그 밖에 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제7조(안전 검토 및 의견 청취) ① 단장은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회의 전에 전문기관, 학회 등에 안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상정된 안전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① 회의에 출석한 민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단장이 미리 안전의 자문을 구한 민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예 〔 〕	아니오 〔 〕
1	도심리지원단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도심리지원단의 심의·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도심리지원단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허가·면허·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4	도심리지원단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5	도심리지원단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도심리지원단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도심리지원단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 ‘예’ 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심리지원단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직 위 :

성 명 : ○ ○ ○

상기 본인은 도심리지원단 단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단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도심리지원단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도심리지원단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 공사, 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도심리지원단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 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도심리지원단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도심리지원단 직무 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도심리지원단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도심리지원단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 향응,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 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도심리지원단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주택 소방 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1년 7월 15일

경상북도 조례 제4541호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8조제3항”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 3항”으로, “관한 사항”을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한부모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8조 제3항”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주택 소방시설 설치 확인) 시장·군수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 택에 대한 건축·대수선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별표의 단독경보형감지기란 제3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의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2021년 7월 15일

경상북도 조례 제4542호

경상북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준법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2. “준법교육”이란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학생 스스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모든 교육을 말한다.
- 3. “준법의식”이란 법을 지키려고 하는 구성원들의 심리적 작용을 의미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 있는 준법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준법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준법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법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준법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준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학생 비행 유형에 따른 준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통계 관리
4. 준법교육 홍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준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준법교육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예방 교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비행예방을 위하여 관할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학생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상담 등) 교육감은 학생의 준법의식 함양을 위하여 상담 등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연수 지원) ① 교육감은 준법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연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준법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

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2021년 7월 15일

경상북도 조례 제4543호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관내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제2호 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2. “학교”란 경상북도에 소재한 공립·사립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교통안전교육”이란 어린이가 이동을 위해 도보, 차량, 이륜차, 선박, 항공기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교육의 체계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6조의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기당 3회 이상(연 10시간 이상) 교육
2. 학교 급별 교육
3. 그 밖에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의 협력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 교통사고 실태조사 및 활용) 교육감은 매년 공신력 있는 교통사고 발생 실태 자료를 활용하고, 그 유형을 분석하여 예방교육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제5조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2. 전문 강사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실습교육
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체험형 위탁교육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통안전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경상북도경찰청, 경상북도소방본부,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 교육시설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교육감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현저하게 기여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2021년 7월 15일

경상북도 조례 제4544호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안강초등학교병설유치원, 봉계초등학교태화분교장병설유치원, 대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지례초등학교부항분교장병설유치원을 각각 삭제하고, 산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위치란 중 “구미시 산동면 강동로 936-18”을 “구미시 산동읍 강동로 936-18”로 하고, 구미인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위치란 중 “구미시 산동면 신당인덕 3로 25”을 “구미시 산동읍 신당인덕3로 25”로 하고, 구미신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위치란 중 “구미시 산동면 신당4로 29”을 “구미시 산동읍 신당4로 29”로 하고, 구미원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위치란 중 “구미시 산동면 옥계신당로9길 21”을 “구미시 산동읍 옥계신당로9길 21”로 하고, 의흥초등학교석산분교장병설유치원 위치란 중 “군위군 고로면 삼국유사로 1314”을 “군위군 삼국유사면 삼국유사로 1314”로

한다.

별표 2 중 산동초등학교 위치란 중 “구미시 산동면 강동로 936-18”을 “구미시 산동읍 강동로 936-18”로 하고, 구미인덕초등학교 위치란 중 “구미시 산동면 신당인덕3로 25”을 “구미시 산동읍 신당인덕3로 25”로 하고, 구미신당초등학교 위치란 중 “구미시 산동면 신당4로 29”을 “구미시 산동읍 신당4로 29”로 하고, 구미원당초등학교 위치란 중 “구미시 산동면 옥계신당로9길 21”을 “구미시 산동읍 옥계신당로9길 21”로 하고, 의흥초등학교석산분교장 위치란 중 “군위군 고로면 삼국유사로 1314”을 “군위군 삼국유사면 삼국유사로 1314”로 한다.

별표 3 중 산동중학교 위치란 중 “구미시 산동면 강동로 998”을 “구미시 산동읍 강동로 998”로 하고, 구미인덕중학교 위치란 중 “구미시 산동면 신당인덕3로 33”을 “구미시 산동읍 신당인덕3로 33”로 한다.

별표 4 중 구미산동고등학교 위치란 중 “구미시 산동면 신당인덕2호 11”을 “구미시 산동읍 신당인덕2로 11”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2. 벽지 <다지역>의 의흥초등학교석산분교장 기관소재지 위치란 중 “고로면 삼국유사로 1314”을 “삼국유사면 삼국유사로 1314”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유치원		【별표 1】 유치원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안강초등학교병설 유치원	경주시 안강읍 비화 원로 34	〈삭 제〉	
봉계초등학교태화 분교장병설유치원	김천시 봉산면 봉산1로 43	〈삭 제〉	
대룡초등학교병설 유치원	김천시 대항면 대룡 로82	〈삭 제〉	
지례초등학교부항 분교장병설유치원	김천시 부항면 양지 말길6	〈삭 제〉	
산동초등학교병설 유치원	구미시 산동면 강동로 936-18	-----	구미시 산동읍 강동로 936-18
구미인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구미시 산동면 신당 인덕3로 25	-----	구미시 산동읍 신당 인덕3로 25
구미신당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구미시 산동면 신당4로 29	-----	구미시 산동읍 신당4로 29
구미원당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구미시 산동면 옥계 신당로9길 21	-----	구미시 산동읍 옥계 신당로9길 21
의흥초등학교석산 분교장병설유치원	군위군 고로면 삼국 유사로 1314	-----	군위군 삼국유사면 삼국유사로 1314
【별표 2】 초등학교		【별표 2】 초등학교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산동초등학교	구미시 산동면 강동 로 936-18	-----	구미시 산동읍 강동로 936-18
구미인덕초등학교	구미시 산동면 신당 인덕3로 25	-----	구미시 산동읍 신당 인덕3로 25

현 행		개 정 안	
구미신당초등학교	구미시 산동면 신당4로 29	-----	구미시 산동읍 신당4로 29
구미원당초등학교	구미시 산동면 옥계 신당로9길 21	-----	구미시 산동읍 옥계 신당로9길 21
의흥초등학교석산분교장	군위군 고로면 삼국유사로 1314	-----	군위군 삼국유사면 삼국유사로 1314
【별표 3】 중학교		【별표 3】 중학교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산동중학교	구미시 산동면 강동로 998	-----	구미시 산동읍 강동로 998
구미인덕중학교	구미시 산동면 신당인덕3로 33	-----	구미시 산동읍 신당인덕3로 33
【별표 4】 고등학교		【별표 4】 고등학교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구미산동고등학교	구미시 산동면 신당인덕2로 11	-----	구미시 산동읍 신당인덕2로 11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2021년 7월 15일

경상북도 조례 제4545호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5조의 제목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7조제1항”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으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공무원은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간 3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방학 등 학교의 휴업일에 한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
직공무원 연가 가산 방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p>	<p>〈삭 제〉</p>
<p>제15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p>	<p>제15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p>
<p>제18조(특별휴가) ① ~ ④ (생 략)</p> <p>⑤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p>	<p>제18조(특별휴가) ① ~ ④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⑥·⑦ (생 략)</p> <p>⑧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학교의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을 이용하여 연간 3일 이내에서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학교 시설물 관리, 민원처리 등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p>	<p>⑥·⑦ (현행과 같음)</p> <p>⑧ 공무원은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간 3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방학 등 학교의 휴업일에 한하여 이용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⑨ ~ ⑪ (생략)</p> <p>[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제15조 관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p> <p>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div>	<p>⑨ ~ ⑪ (현행과 같음)</p> <p>[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 가산 방법(제15조 관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p> <p>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div>



경 상 북 도

위 명

경상북도 공무원근로자 정수관리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1년 7월 15일

경상북도 훈령 제1588호

경상북도 공무원근로자 정수관리규정 일부개정령

경상북도 공무원근로자 정수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 공무원근로자 정수관리규정”을 “경상북도 공무원근로자 및 청원경찰 정수관리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사업소”를 “사업소·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하고, “공무원근로자”를 “공무원근로자 및 청원경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사업소(이하 “도 및 소속기관”이라 한다)와”를 “사업소·합의제행정기관(이하 “도 및 소속기관”이라 한다)과”으로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에 따라 시설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배치된 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제4호 중 “공무직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공무직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공무직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공무직근로자들”을 “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을”로 하고, “사업소
를”을 “사업소·합의제행정기관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공무직근로자는”을 “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공무직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공무직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으로 한다.

제8조 중 “공무직근로자들”을 “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을”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공무직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으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공무직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으로 한다.

제8조제5호 중 “공무직근로자가”를 “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이”로 한다.

제10조 중 “공무직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계	563	98	453	11	1	
----	-----	----	-----	----	---	--

별표 1 중 본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본청	157	52	105			
----	-----	----	-----	--	--	--

별표 1의 본청 중 일자리경제노동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자리경제노동과	1	1				
----------	---	---	--	--	--	--

별표 1의 본청 중 회계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회계과	86	3	83			
-----	----	---	----	--	--	--

별표 1의 본청 중 사회복지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회복지과	4	4				
-------	---	---	--	--	--	--

별표 1의 본청 중 “보건정책과”를 “감염병관리과”로 한다.

별표 1 중 직속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직속기관	199	29	170			
------	-----	----	-----	--	--	--

별표 1의 직속기관 중 농업기술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업기술원	116	8	108			
-------	-----	---	-----	--	--	--

별표 1의 직속기관 중 농업기술원의 총무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무과	7	3	4			
-----	---	---	---	--	--	--

별표 1의 직속기관 중 농업기술원의 농촌지원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촌지원국	11	5	6			
-------	----	---	---	--	--	--

별표 1의 직속기관 중 보건환경연구원의 본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본원	27	3	24			
----	----	---	----	--	--	--

별표 1의 직속기관 중 보건환경연구원의 본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북부지원	6		6			
------	---	--	---	--	--	--

별표 1의 직속기관 중 소방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서	31	15	16			
-----	----	----	----	--	--	--

별표 1의 직속기관 중 소방서의 포항북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항북부	2	1	1			
------	---	---	---	--	--	--

별표 1의 직속기관 중 소방서의 포항남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항남부	2	1	1			
------	---	---	---	--	--	--

별표 1의 직속기관 중 소방서의 문경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문경	2	1	1			
----	---	---	---	--	--	--

별표 1의 직속기관 중 경북도립대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북도립대학교	5		5			
---------	---	--	---	--	--	--

별표 1 중 사업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소	149	11	126	11	1	
-----	-----	----	-----	----	---	--

별표 1의 사업소 중 축산기술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축산기술연구소	18		18			
---------	----	--	----	--	--	--

별표 1의 사업소 중 산림자원개발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림자원개발원	19	1	18			
---------	----	---	----	--	--	--

별표 1의 사업소 중 산림자원개발원의 본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본원	13	1	12			
----	----	---	----	--	--	--

별표 1의 합의제행정기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합의제행정기관	1	1				
---------	---	---	--	--	--	--

별표 1의 합의제행정기관 중 자치경찰총괄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자치경찰총괄과	1	1				
---------	---	---	--	--	--	--

별표 2 중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계	49		46		3	
----	----	--	----	--	---	--

별표 2 중 사업소의 소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계	6	3	3
----	---	---	---

별표 2의 사업소 중 산림자원개발원의 소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계	2	1	1
----	---	---	---

별표 2의 사업소 중 산림자원개발원의 관리운영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리운영과	1	1	
-------	---	---	--

별지 제1호 서식의 “경상북도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을 “경상북도 공무원 근로자 및 청원경찰 정수관리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경상북도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을 “경상북도 공무원 근로자 및 청원경찰 정수관리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 상 북 도

고 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1 - 228호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사방사업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5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방지 지정해제 내역 : 『붙임』 내역과 같음
2. 사방지 지정해제 사유 : 사방지 지정 목적상실
3. 사방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게재 생략한 사방지 지정해제 지형도면은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 (☎ 054-420-870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내역서

토지소재지				지목	전체 면적 (㎡)	지정현황			해제 면적 (㎡)	잔여 면적 (㎡)	해제사유	비고
시 군	읍 면	리 동	지번			지정 면적 (㎡)	지정년 월일 (고시 번호)	사업 종류				
계			1필지					207	-			
구 미	선 산	독 동	산56 -13	임	43,417	207	2017- 06-26 (166호)	계류 보전	207	-	사방지지정 목적상실	지번분할608- 10(53㎡) 산56-26(154㎡)

경상북도 고시 제2021 - 229호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5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방지 지정 내역 : 붙임 내역과 같음
2. 사방지 지정 사유 : 2021년 사방사업시행
3. 사방지 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게재 생략한 사방지 지정 지형도면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 054-420-870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사 방 지 지 정 고 시 내 역 서

소 재 지				지목	전체 면적 (m ²)	지정 면적 (m ²)	소유자 또는 점유자	성 명	사업 종류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주소			
계			6필지		579,202	977				
성주	금수	봉두	1114	구	10,951	697		국(농림 축산부)	계류 보전	대표 지번
성주	금수	봉두	산29	임	563,445	115	성주군 대가면 칠봉리 222	고성이씨 성암공파 종중	계류 보전	
성주	금수	봉두	986	답	1,745	17	성주군 금수면 봉두리 959	이상순	계류 보전	
성주	금수	봉두	989	전	1,651	39	성주군 금수면 봉두길 59	김민경외 1	계류 보전	
성주	금수	봉두	989-1	전	1,091	15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1306-1 한샘타운 102-607	강정숙	계류 보전	
성주	금수	봉두	993	답	319	94	성주군 대가면 칠봉리 222	고성이씨 성암공파 종중	계류 보전	

경상북도 고시 제2021 -230호

현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준공인가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0-425호(2020.12.7.)로 시행계획 승인한 현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5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의 목적** : 청송군 현서면 사촌리외 8개리를 사업구역으로하여 저수지 2개소와 용수로를 설치하여 농촌지역의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생활 환경개선 및 영농편의개선으로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2. 사업내용

- 가. 사 업 명 : 현서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 나. 위 치 :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사촌리 외 8개리
- 다. 수혜면적 : 403.0ha (신규: 387ha, 보강: 9ha, 기설: 7ha)

라. 사업개요 : 저수지 2개소(사촌지 1,163천 m^3 , 천천지 852천 m^3), 이설도로 2.369km,
용수로 L=35.108km

3. 사업비 : 41,726백만원

4. 사업기간 : 2009. 08. ~ 2021. 06. 30.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장

6. 기 타 :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054-870-0531)에서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고시 제 2021 - 231호

구매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구매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5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의 목적 : 농업용수 부족 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농업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업 소득증대에 기여함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가. 사업명 : 구매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나. 위치 : 경북 영양군 청기면 구매리 일원

다. 수혜면적 : 49.0ha(신규 44.5, 기설 4.5)

라. 사업량

○ 수원공 : 저수지 1개소 (총저수량 12.7만 m^3 , 유효저수량 12.4만 m^3)

- 제 방 : 신설 L=101m, H=22.6m
- 물넘이방수로 : 물넘이 L=30.0m, 방수로L=135.0m
- 복 통 : 강관 D=1.8m, L=95.7m
- 사 통 : 3공(D=300mm)
- 이설도로 : 2조 L=646m, B=4.0m(Con'c포장, B=3.0m)

3. 사 업 비 : 7,000백만원

4. 사업예정기간 : 2021. 7. ~ 2025. 12. 31.

5. 사업의 효과 : 수자원 확보, 영농환경 개선

6. 사업시행자 : 영양군수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8. 기 타 : 관계 설계도서는 영양군 지역개발과(☎054-680-6332), 한국농어촌
공사 청송·영양지사(☎054-870-0530)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성명 또는 명칭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면적 (㎡)	면입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45필지			756,354	50,442								
1	영양	청기	구매	산86	임야	55,934	1,862	최찬원	서울 송파구 풍납동 508 한강극동(아) 106-1208							
2	영양	청기	구매	산88	임야	16,264	304	전병화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산22 우성아파트 12동 404호							
3	영양	청기	구매	산93	임야	138,050	327	김숙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들로 31, 123동 2306호 (월계동, 그랑빌아파트)							지분 1/5
								김춘택	경상북도 영천시 청석고개길5,307호							지분 1/5
								김덕중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민회관길 11-6, 나동 501호(혜성빌라)							지분 1/5
								김경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삼발로 196, 607동 1404호 (하계동, 장미아파트)							지분 1/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지분 1/5
4	영양	청기	구매	산109	임야	376,066	9,928	김은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2길 14, 106동 801호(송파동, 파삼성래미안아파트)	김은자			
5	영양	청기	구매	산111- 1	임야	28,165	1,139	심정희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면 월막동 422	김장락			
6	영양	청기	구매	962	답	801	122	김찬주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 265-30 대성빌라 라-202	심정희			
7	영양	청기	구매	962-1	답	12	12	김찬주	경상북도 안동시 한화길 37 101동 1008호 (운안동, 대원한숲타운)	김찬주			
8	영양	청기	구매	963	답	645	171	김찬주	경상북도 안동시 한화길 37 101동 1008호 (운안동, 대원한숲타운)	김찬주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면적 (㎡)	면입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9	영양	청기	구매	964	답	1,620	28	김찬주	경상북도 안동시 한화길 37 101동 1008호 (운안동, 대원한솔타운)				
10	영양	청기	구매	965	전	602	34	김영락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장기로 1696번길 5				
11	영양	청기	구매	970	전	460	88	김수경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구매동 918				
12	영양	청기	구매	975	임야	1,607	50	우숙애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642-17				
13	영양	청기	구매	1039	답	1,445	603	김찬룡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구매동 912				
14	영양	청기	구매	1040	답	304	304	김규사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구매동 901				孫子 김낙중
15	영양	청기	구매	1041	전	1,759	92	김종성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구매동 930				
16	영양	청기	구매	1045	답	1,269	1,269	김규외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구매동 916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면적 (㎡)	면입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7	영양	청기	구매	1046	전	1,078	1,078	김낙중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구매동 909				
18	영양	청기	구매	1047	전	1,788	1,302	이동욱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7길 13 (응암동)				
19	영양	청기	구매	1050	임야	760	53	유정자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구매길 384				
20	영양	청기	구매	1051	전	3,309	3,309	박윤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4가 30-1 3층				
21	영양	청기	구매	1052	답	939	939	김종락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구매리 920				女권오순
22	영양	청기	구매	1053	전	2,942	2,942	김규축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구매동 943				지분 1/2
23	영양	청기	구매	1055	전	1,960	1,960	김성진 이주식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구매동 924 영양군 청기면 구매동 864				지분 1/2
24	영양	청기	구매	1056	임	1,167	358	김경해					김찬홍 (미등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성명 또는 명칭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5	영양	청기	구매	1057	전	2,350	895	김찬욱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호로 324-29 비동 201호(두호동, 명사마을)						
26	영양	청기	구매	1058	전	5,755	5,755	장정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대5길 23					지분 1/2	
								나항집	시흥시 조남동 171-20 수정아파트604					지분 1/2	
27	영양	청기	구매	1060	임야	198	34	이윤담	경상북도 안동군 예안면 도촌동 767						
28	영양	청기	구매	1061	답	2,327	2,327	김규원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구매리 1218						
29	영양	청기	구매	1062	전	853	853	김영락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장기로 1696번길 5						
30	영양	청기	구매	1063	답	337	337	김찬주	경상북도 안동시 한화길 37, 101동 1008호 (운안동, 대원한숲타운)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31	영양	청기	구매	1066	과수원	965	74	유정자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구매길 384				
32	영양	청기	구매	1067	대	853	84	김도중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 76, 102동 1504호(상모동, 상모한신희플러스)				
33	영양	청기	구매	1070	전	1,765	439	한상오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105-14				
34	영양	청기	구매	1071	전	2,122	2,122	김찬결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1길 23(용상동)				
35	영양	청기	구매	1072	임야	982	89	이성임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담중앙13길 18-7(용담동)				
36	영양	청기	구매	1075	전	56	56	김규표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구매동 969				
37	영양	청기	구매	1076	답	654	353	김찬결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1길 23(용상동)				
38	영양	청기	구매	1077	답	218	36	김찬결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1길 23(용상동)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면적 (㎡)	면입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9	영양	청기	구매	1390	구거	94,929	6,587	국	국(농수산부)				농수산부 관리
40	영양	청기	구매	1404	도로	1,150	615	국	국(건설부)				건설부 관리
41	영양	청기	구매	1413	도로	129	129	국	국(건설부)				건설부 관리
42	영양	청기	구매	1414	도로	407	407	국	국(건설부)				건설부 관리
43	영양	청기	구매	1415	도로	654	376	국	국(건설부)				건설부 관리
44	영양	청기	구매	1416	도로	288	288	국	국(건설부)				건설부 관리
45	영양	청기	구매	1417	도로	416	312	국	국(건설부)				건설부 관리

경상북도고시 제 2021 -232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7 월 15일

경 상 북 도 지 사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포항남부 소방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5890	포항남부 소방서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이상의 공공청사	관리주체 관리	

경상북도 고시 제2021 - 233호

북경주 웰니스 관광단지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북경주 웰니스 관광단지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7. 15.

경 상 북 도 지 사

1. 관광단지 지정 개요

가. 관광단지명 : 북경주 웰니스 관광단지

나. 위 치 : 경주시 안강읍 검단장골길 181-17 일원

다. 지정 면적 : 809,797m²

라. 관광단지 지정 년월일 : 2021. 7. 15.

마. 지정 목적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양동마을, 옥산서원) 등과 연계하는 특화된 경주의 역사 문화자원과 자연자원의 거점 관광단지 조성

-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사회적 관광경제와 접목하여 미래지향적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기능적 거점 관광단지 조성

* 지역 내 활동중인 관광단체 및 관광 관련업체 등을 적극 활용하여 관광벤처센터를 중심으로 사회적 관광경제와 접목, 지역관광 거버넌스 구축

- 관광단지 전체가 웰니스 프로그램으로 연결된 복합적 웰니스의 역할을 수행하는 차별화된 관광단지 조성

바. 관광단지 지정 지형도면 고시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사. 토지조서 : 게재생략(경주시청 관광컨벤션과에 비치)

2. 승인가시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고, 경상북도 관광정책과(☎054-880-3190) 및 경주시청 관광컨벤션과(☎ 054-779-608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경상북도 고시 제2021-234호

경상북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고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동남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경상북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7월 15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수립목적** : 동남권 지역의 대기오염원을 체계적·광역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동남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을 추진하기 위해 경상북도 세부 시행계획 수립

2. 주요내용

- 가. 수립근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나. 수립권자 : 경상북도지사(환경부장관 승인)
- 다. 계획기간 : 5개년(2020년~2024년)

라. 관리범위 : 도내 동남권 대기관리권역 6개 시군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 동남권 대기관리권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일부(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일부(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마. 관리대상물질(7개) :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먼지, 미세먼지

(PM10), 초미세먼지(PM2.5), 오존(O3)

바. 동남권 대기질 개선목표

- PM10 $33\mu\text{g}/\text{m}^3$, PM2.5 $17\mu\text{g}/\text{m}^3$, NO2 0.015ppm, O3 0.06ppm

사. 주요 추진대책

○ (도로이동오염원) 저공해차 전환 및 보급 확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 친환경 전기자동차 등 보급(4.6천대)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22천대)

○ (비도로이동오염원) 건설·농업기계 관리, 항만·공항관리

- 노후 건설·농업기계 배출가스 저감(4.5천대)

- 공항대기개선대책 수립 등

○ (배출시설) 오염물질 총량관리 시행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시행(106개소)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1.4천개소)

○ (생활오염원)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등

3. 소요재원

○투자계획 : '20~'24년 총 3,116억원(국비 1,705, 지방비 1,411) 소요

(단위 : 백만원)

대 책	전 체	국 비	지방비
· 도로이동오염원	147,104	79,711	67,393
· 비도로이동오염원	18,690	9,814	8,876
· 사업장 관리	106,707	58,687	48,020
· 생활오염원 관리	31,650	15,825	15,825
· 정책기반 강화 등	7,500	6,500	1,000
합 계	311,651	170,537	141,114

4. 지역배출허용총량 및 목표배출량

(단위 : 톤, %)

구분	'24년 배출량					
	전망배출량 (A)	기본계획 배출허용총량(B)	시행계획 목표배출량(C)	삭감량 (A-C)	비율 (C/B×100)	
경북도	PM10	43,256	37,040	34,589	8,667	93
	PM2.5	21,694	18,469	15,448	6,246	84
	NOx	84,958	54,775	47,478	37,480	87
	SOx	50,973	36,555	35,079	15,894	96
	VOCs	47,917	44,680	40,356	7,561	90



경 상 북 도

공 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1-1394호

제4단계 낙동강수계 경상북도 관할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공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4단계 낙동강수계 경상북도 관할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경 상 북 도 지 사

제4단계 낙동강수계 경상북도 관할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단위 유역명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	목표수질 (mg/l)	
		BOD	T-P
낙본B	낙동강 수계구간중 강원도와 경상북도 경계점후부터 봉화군과 안동시 경계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1.1	0.022
반변A	반변천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영양군과 청송군 경계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1.0	0.020
용전A	용전천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신흥천 합류점까지 전구간 및 유역	1.0	0.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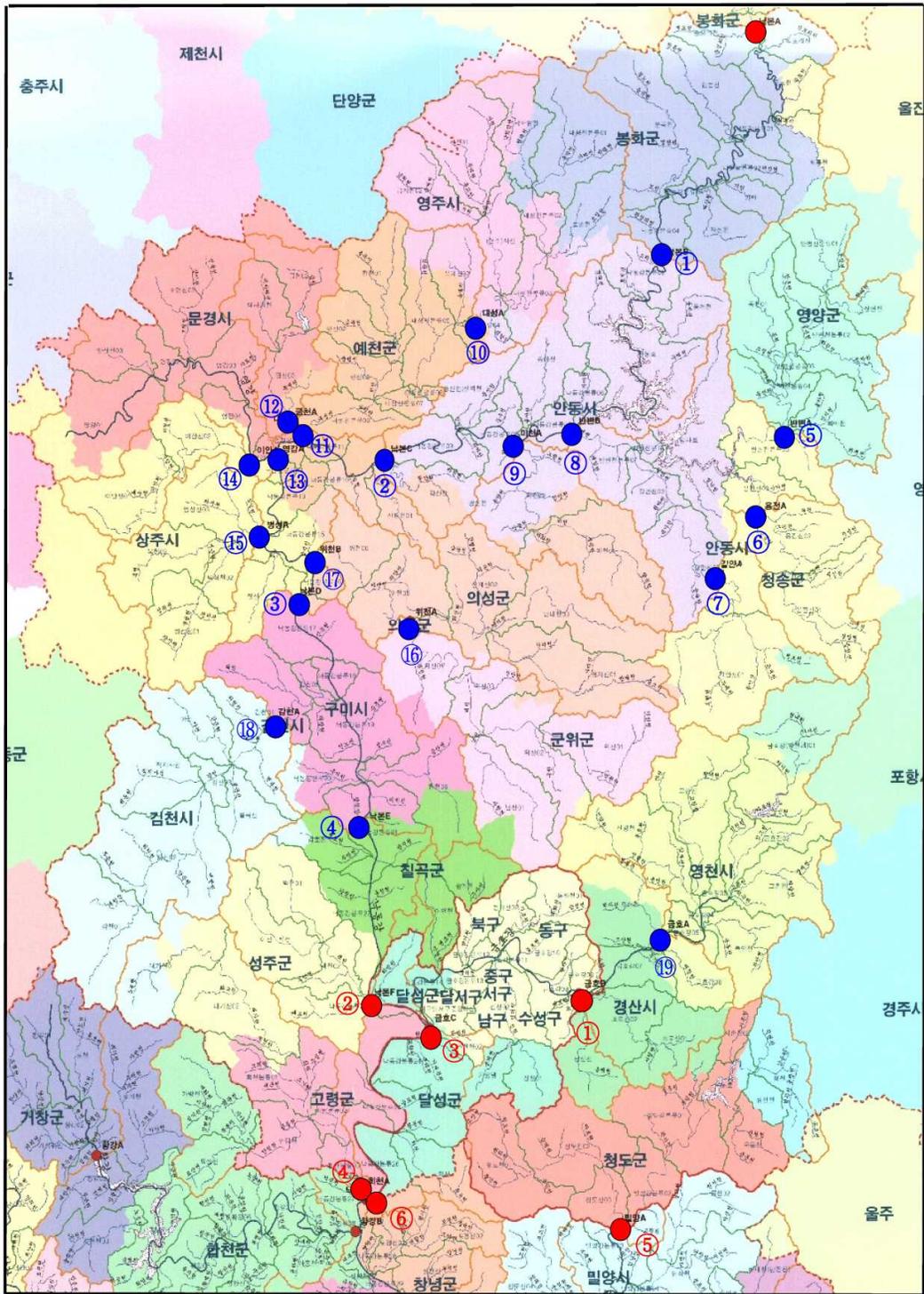
단위 유역명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	목표수질 (mg/l)	
		BOD	T-P
길안A	길안천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청송군과 안동시 경계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1.0	0.020
반변B	반변천 수계구간중 영양군과 청송군 경계점후부터 낙동강 합류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1.4	0.026
미천A	미천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낙동강 합류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1.3	0.030
낙본C	낙동강 수계구간중 봉화군과 안동시 경계점후부터 안동시와 예천군 경계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1.2	0.025
내성A	내성천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영주시와 예천군 경계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1.2	0.043
내성B	내성천 수계구간중 영주시와 예천군 경계점후부터 낙동강 합류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1.2	0.041
금천A	금천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내성천 합류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1.4	0.037
영강A	영강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낙동강 합류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1.4	0.028
이안A	이안천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영강 합류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1.5	0.034
병성A	병성천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낙동강 합류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1.7	0.060
위천A	위천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군위군과 의성군 경계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1.2	0.023
위천B	위천 수계구간중 군위군과 의성군 경계점후부터 낙동강 합류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1.9	0.036
낙본D	낙동강 수계구간중 안동시와 예천군 경계점후부터 상주시와 구미시 경계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1.4	0.029
감천A	감천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김천시와 구미시 경계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1.5	0.057
낙본E	낙동강 수계구간중 상주시와 구미시 경계점후부터 구미시와 칠곡군 경계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1.7	0.036
금호A	금호강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영천시와 경산시 경계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1.8	0.058
금호B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경계의 금호강 본류지점(남천 합류전)	3.0	0.072

단위 유역명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	목표수질 (mg/l)	
		BOD	T-P
금호C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계지점의 금호강 본류지점(낙동강본류 합류전 금호강 본류지점)	3.4	0.098
낙분F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경계의 낙동강 본류지점(성주군과 고령군 경계의 신천 합류후 지점)	1.9	0.040
낙분G	대구광역시와 경상남도 경계지점의 낙동강 본류지점(회천 합류전 낙동강 본류 지점)	2.6	0.056
회천A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경계지점의 회천 본류 지점(낙동강 본류 합 류전 회천본류 지점)	1.2	0.038
밀양A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경계의 밀양강 본류 지점	1.3	0.031

1. 경상북도 관할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20-163(’ 21.7.27.)호의 「낙동강수계목표수질
설정수계구간및유역」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계구간을 말한다.
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제6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
3. 목표수질의 단위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5) 및 총인(T-P)mg/l 으로 한다

부칙 : 상기 목표수질은 2021.1.1.~2030.12.31.까지 시행한다.

● 시·군 경계지점(도지사공고) ● 시·도 경계지점(환경부고시)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 공고 제 2021 - 1395 호

「수산업경영인」 선정취소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수산업경영인」 취소선정 사유가 발생하여 의견제출 안내문을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15일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소장

1. **공고기간** : 2021. 07. 15. ~ 2021. 07. 28.(14일간)
2. **공고방법** : 경상북도 도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공고내용

가. 제 목	수산업경영인 선정취소 의견제출						
나. 당 사 자	1. 최 유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운하로 152, 103호)						
	2. 김 봉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 54번길 21, 203호)						
	3. 김 민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공로 222번길 9, 2층)						
	4. 김 기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 259번길 20, 나동 105호)						
다. 취소사유	어업기반 상실, 교육미수료						
마. 법적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포항시 수산진흥과-10728(2021.6.17.) 2021년도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바. 기 타	문의처	기관명	경상북도	부서명	어업기술센터	담당자	정 강 진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홍해읍 영일만항로 111-1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			전화번호	054)240-0340
						모사전송	054)240-1641

4. 기타사항 : 본 공고문은 게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1-1399호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고

영업실적 및 영업계획 미제출, 등록사항 변경 신고 지연(누적)으로 주택법을 위반한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 같은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8조 제1항 별표1에 근거한 처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 내용

가. 처분대상 및 처분내용

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처분사항	위반내용	비고
굿타임종합토건(주)	조규현	경북-주택1999-0016	영업정지1개월 (‘21.7.14. -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금호물산	이동훈	경북-주택2014-0026	영업정지1개월 (‘21.7.14. -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나훈종합건설	김재중	경북-주택2011-0040	영업정지1개월 (‘21.7.14. -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대성건설	이강대	경북-주택1999-0003	영업정지1개월 (‘21.7.14. -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덕흥종합건설(주)	김규택	경북-주택1995-0002	영업정지1개월 (‘21.7.14. -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도시건설(주)	차규섭	경북-주대2002-0016	영업정지1개월 (‘21.7.14. -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처분사항	위반내용	비고
(주)동강개발	권현숙	경북-주택2015 -0051	영업정지1개월 ('21.7.14,-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동신종합건설(주)	신동근	경북-주택2006 -0015	영업정지1개월 ('21.7.14,-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동아종합건설	강민주	경북-대지2017 -0034	영업정지1개월 ('21.7.14,-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동영건설	천철성	경북-주택2004 -0018	영업정지1개월 ('21.7.14,-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동우개발	곽선희	경북-대지2018 -0019	영업정지1개월 ('21.7.14,-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동참	이관형	경북-주택2008 -0003	영업정지1개월 ('21.7.14,-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동화건설(주)	윤승권	경북-주택2016 -0035	영업정지1개월 ('21.7.14,-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두일개발	김희숙 외 1	경북-대지2015 -0052	영업정지1개월 ('21.7.14,-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디케이개발(주)	유기정	경북-주대2011 -0006	영업정지1개월 ('21.7.14,-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로얄(주)	조희수	경북-주대1998 -0002	영업정지1개월 ('21.7.14,-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메이저산업(주)	황상운	경북-주택2007 -0023	영업정지1개월 ('21.7.14,-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명선주택건설	서석태 외 1	경북-주택2017 -0005	영업정지1개월 ('21.7.14,-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미래하우테크	이미리 외 1	경북-주택2009 -0008	영업정지1개월 ('21.7.14,-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미르개발(주)	정우영	경북-주택2015 -0057	영업정지1개월 ('21.7.14,-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처분사항	위반내용	비고
(주)방주주택건설	김성욱	경북-주택1999 -0012	영업정지1개월 ('21.7.14. -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범소산업개발	서경도	경북-주택2010 -0004	영업정지1개월 ('21.7.14. -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삼영종합건설	박건택	경북-주택2012 -0006	영업정지1개월 ('21.7.14. -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상일건설	배철현	경북-주택2007 -0008	영업정지1개월 ('21.7.14. -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서림	임규춘	경북-주대2015 -0066	영업정지1개월 ('21.7.14. -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성림종합건설	김태인	경북-주택1989 -0003	영업정지1개월 ('21.7.14. -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세현주택	김호남	경북-주택1990 -0003	영업정지1개월 ('21.7.14. -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수목	이인자	경북-주택2015 -0010	영업정지1개월 ('21.7.14. -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승민종합건설	이선연	경북-주택2004 -0015	영업정지1개월 ('21.7.14. -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시호	김규호	경북-주택2015 -0035	영업정지1개월 ('21.7.14. -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신영	황찬익	경북-주택1998 -0001	영업정지1개월 ('21.7.14. -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에버건설	장동규	경북-주대2015 -0089	영업정지1개월 ('21.7.14. -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에셀건설	반에셀	경북-주택2016 -0007	영업정지1개월 ('21.7.14. -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에이치디건설	홍성현	경북-주택2015 -0009	영업정지1개월 ('21.7.14. -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처분사항	위반내용	비고
(주)엘에이치주택건설	윤우기	경북-주택2018 -0008	영업정지1개월 ('21.7.14,-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예공	이정희	경북-주택2004 -0008	영업정지1개월 ('21.7.14,-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요원	김영민	경북-대지2015 -0039	영업정지1개월 ('21.7.14,-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우진건설(주)	권제원 외 1	경북-주대2004 -0017	영업정지1개월 ('21.7.14,-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이화건설	홍도일	경북-주택2015 -0068	영업정지1개월 ('21.7.14,-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일성건설(주)	정종순	경북-대지2016 -0024	영업정지1개월 ('21.7.14,-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제일건설	김재호	경북-주택1988 -0003	영업정지1개월 ('21.7.14,-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좋은세상주택건설(주)	김영문	경북-주택2003 -0012	영업정지1개월 ('21.7.14,-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진솔씨앤디	박원규	경북-주택2006 -0016	영업정지1개월 ('21.7.14,-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초록전원마을	이형선	경북-주택2007 -0029	영업정지1개월 ('21.7.14,-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케이원개발(주)	심인보	경북-대지2017 -0042	영업정지1개월 ('21.7.14,-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토원	김동완	경북-대지2018 -0004	영업정지1개월 ('21.7.14,-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토투개발	편영식	경북-주택2002 -0013	영업정지1개월 ('21.7.14,-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포시즌	정용창	경북-주택2016 -0012	영업정지1개월 ('21.7.14,-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처분사항	위반내용	비고
하늘종합건설(주)	권형진	경북-주대2003 -0029	영업정지1개월 ('21.7.14,-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해뜰건설(주)	이건웅	경북-주택2006 -0005	영업정지1개월 ('21.7.14,-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해성디앤씨(주)	육반혁	경북-주택2012 -0021	영업정지1개월 ('21.7.14,-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해성종합건설	장호준	경북-주택2012 -0022	영업정지1개월 ('21.7.14,-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현주건설(주)	김학열	경북-주택2007 -0026	영업정지1개월 ('21.7.14,-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현주건설(주)	하태홍	경북-주택2007 -0027	영업정지1개월 ('21.7.14,-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형산주택(주)	김해동	경북-주택2001 -0004	영업정지1개월 ('21.7.14,-8.1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해솔디앤씨	박경택	경북-대지2018 -0009	영업정지0.5개월 ('21.7.14,-7.29.)	- 기술자변경 지연신고	

나. 처분사유 : 주택법 위반에 따른 처분

다. 처분근거 : 주택법 제8조 및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별표 1

라. 처분일자 : 2021. 7. 14.

- 2. 등록사업자는 매년 영업실적 및 영업계획,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대한주택건설협회 경상북도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대한주택건설협회 경상북도회 ☎ 053-753-6393

3.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우리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7월 15일

경 상 북 도 지 사



시 군

고 시

구미시 고시 제2021 - 131호

구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구미시 사곡동 888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로 지정 및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7. 15.

구 미 시 장

□ 사업내용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사곡동 88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구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소로2류 489호선 도로확폭공사

3. 사업의 규모	구 분	시설명	규모 및 내역	비 고
	도 로	소로2-489호선	· 연장 : 13m · 폭원 : 8m	
4.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새마을로 150-1, 1동 112호 (사곡동) ○ 성 명 : 머니트리 주식회사 대표 오성용 			
5.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 2021. 7.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아래 조서와 같음.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동	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합 계				9,185.3	114.0			
1	사곡동	873	공	4,708.9	23.0		구미시	
2	사곡동	874	구	593.3	3.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3	사곡동	888	도	3,883.1	88.0		구미시	

※ 관계도서는 구미시 도시계획과(054-480-5405)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끝.

영천시고시 제2021 - 58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영천 도시계획시설인 교통시설(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7. 15.

영 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영천시 창구동 98-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영천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2) 명 칭 : 북문사거리~중앙사거리간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 1) 목 적 :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도로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
- 2) 내 용 : 도로개설(중로1-33호선) B=24m, L=345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영천시장
- 2) 주 소 : 영천시 시청로 16 (문외동)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부터 ~ 2023. 12. 31.**6.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 아래참조****7. 관계서류 및 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7-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창구동	155-7	도	510	16	공	영천시				
2	창구동	155-23	대	2	2	공	영천시				
3	창구동	155-25	대	6	6	공	영천시				
4	창구동	155-24	대	18	18	공	영천시				
5	창구동	155-5	도	116	26	배덕운	영천시 문내동 65				미등기
6	창구동	147-1	도	36	4	국	건설부				
7	창구동	147-19	대	45	42	공	영천시				
8	창구동	147-20	대	71	71	공	영천시				
9	창구동	147-4	대	26	26	공	영천시				
10	창구동	145-8	대	15	15	공	영천시				
11	창구동	147-6	대	7	7	공	영천시				
12	창구동	147-7	대	57	57	김남이	영천시 천문로 356(창구동)				상속 대상자 4명
13	창구동	145-9	대	50	50	공	영천시				
14	창구동	145-10	대	70	70	공	영천시				
15	창구동	207-21	도	68	29	국	건설부				
16	창구동	138-12	대	74	74	공	영천시				
17	창구동	138-7	대	39	39	공	영천시				
18	창구동	138-13	대	50	50	공	영천시				
19	창구동	137-4	대	5	5	공	영천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20	창구동	137-2	대	15	15	공	영천시				
21	창구동	139-1	대	56	56	공	영천시				
22	창구동	137-3	대	19	19	공	영천시				
23	창구동	218-1	대	33	33	국	기획재정부				
24	창구동	140-1	대	17	17	공	영천시				
25	창구동	135-1	대	135	135	공	영천시				
26	창구동	218-2	대	2	2	국	기획재정부				
27	창구동	133-8	대	81	81	공	영천시				
28	창구동	132-5	도	106	106	공	영천시				
29	창구동	132-6	대	39	39	공	영천시				
30	창구동	207-18	도	60	60	국	건설부				
31	창구동	96-4	대	33	33	공	영천시				
32	창구동	96-2	도	10	10	국	건설부				
33	창구동	96-5	대	40	40	공	영천시				
34	창구동	95-5	대	89	89	공	영천시				
35	창구동	95-6	대	105	105	공	영천시				
36	창구동	95-4	대	33	33	공	영천시				
37	창구동	207-14	도	124	32	국	건설부				
38	창구동	90-24	대	33	33	공	영천시				
39	창구동	90-49	대	54	54	공	영천시				
40	창구동	90-48	대	7	7	공	영천시				
41	창구동	90-23	대	33	33	공	영천시				
42	창구동	90-50	대	18	18	공	영천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43	창구동	90-22	대	23	22	공	영천시				
44	창구동	90-12	도	896	695	공	영천시				
45	창구동	90-11	대	288	288	공	영천시				
46	창구동	90-52	대	63	63	공	영천시				
47	창구동	90-53	대	42	42	공	영천시				
48	창구동	90-54	대	44	44	공	영천시				
49	창구동	90-51	대	81	81	공	영천시				
50	창구동	42-2	도	7	6	국	재무부				
51	창구동	42-18	대	141	122	공	영천시				
52	창구동	42-19	대	72	72	공	영천시				
53	창구동	43-5	대	68	68	공	영천시				
54	창구동	43-6	대	80	80	공	영천시				
55	창구동	43-4	도	407	42	공	영천시				
56	창구동	154-6	도	407	5	공	영천시				
57	창구동	154-2	도	98	58	공	영천시				
58	창구동	154-5	도	313	169	공	영천시				
59	창구동	154-3	도	304	64	국	건설부				
60	창구동	148-32	대	27	27	공	영천시				
61	창구동	148-33	대	4	4	공	영천시				
62	창구동	148-34	대	6	6	공	영천시				
63	창구동	207-24	대	48	48	공	영천시				
64	창구동	148-35	대	8	8	공	영천시				
65	창구동	148-36	대	7	7	공	영천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66	창구동	148-37	대	1	1	공	영천시				
67	창구동	144-2	도	99	99	국	건설부				
68	창구동	130-3	도	5,289	2,250	공	영천시				
69	창구동	139-2	도	86	86	하석주	120				
70	창구동	142-1	도	13	13	국	건설부				
71	창구동	133-2	도	119	119	이춘실	창구동				
72	창구동	207-17	도	36	36	공	영천시				
73	창구동	97	도	36	36	국	건설부				
74	창구동	98-4	도	3	3	국	건설부				
75	창구동	98-2	도	205	205	김기용	창구동				
76	창구동	98-3	도	270	270	공	영천시				
77	창구동	98-1	대	10	10	공	영천시				
78	창구동	100-1	도	13	13	국	건설부				
79	창구동	99-2	도	86	86	국	건설부				
80	창구동	207-13	도	48	47	공	영천시				
81	창구동	90-40	도	416	412	공	영천시				
82	창구동	207-1	도	7,262	533	국	건설부				
83	창구동	75-3	도	10	5	최익조	대구부 남산정 298				
84	창구동	75-1	도	13	13	국	건설부				
85	창구동	68-1	도	30	30	백기호	경산군 안심면 용계동 723				
86	창구동	73-1	도	43	43	이금이	창구동 73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87	창구동	68-2	도	385	365	공	영천시				
88	창구동	72-3	도	3	3	이귀동 외 7인	영천시 창구동 72				
89	창구동	43-2	도	50	31	차치준	영천시 문내동 35				
90	창구동	71-5	도	3	3	김금도	영천읍 문외동 147-6				
91	창구동	72-4	도	3	2	이귀동 외 7인	영천시 창구동 72				
92	창구동	71-2	도	13	7	이성진	71-1				
93	창구동	90-33	도	217	217	공	영천시				

의성군 고시 제2021 - 83호

의성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의성군 옥산면 오류리 산48번지 일원 『의성 황학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도로,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7. 15.

의 성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의성 황학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의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가. 군계획시설 결정

1) 교통시설

가) 도로

(1) 도로 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6	8,144	167,294	-	-	-	-	-	-	6	8,144	167,294
소로	6	8,144	167,294	-	-	-	-	-	-	6	8,144	167,294

(2)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1	6	국지 도로	1,683	매곡리 산2-3	실업리 산93-1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2	4	국지 도로	3,431	실업리 산93-1	감계리 산27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3	4	국지 도로	2,496	실업리 산119-1	금학리 산66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4	4	국지 도로	448	오류리 산48	오류리 산44-1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5	4	국지 도로	72	오류리 산44-1	오류리 산44-1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6	4	국지 도로	14	실업리 산93-1	실업리 산93-1	일반 도로	-	-	

■ 도로 결정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소로3-1호선	• 노선신설 - B= 6m, L=1,683m	• 황학산 풍력발전시설의 유지관리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군계획시설 도로 결정하고자 함
-	소로3-2호선	• 노선신설 - B= 4m, L=3,431m	
-	소로3-3호선	• 노선신설 - B= 4m, L=2,496m	
-	소로3-4호선	• 노선신설 - B= 4m, L=448m	
-	소로3-5호선	• 노선신설 - B= 4m, L=72m	
-	소로3-6호선	• 노선신설 - B= 4m, L=14m	

2)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전기공급설비

(1)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증) 64,124	64,124		
신설	1	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	오류리 산58-3	-	증) 4,250	4,250	-	
신설	2	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	오류리 산58-3	-	증) 2,483	2,483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신설	3	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	실업리 산93-1	-	증) 3,016	3,016	-	
신설	4	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	실업리 산93-1	-	증) 4,087	4,087	-	
신설	5	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	실업리 산93-1	-	증) 4,880	4,880	-	
신설	6	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	전흥리 산104	-	증) 4,100	4,100	-	
신설	7	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	전흥리 산109	-	증) 3,208	3,208	-	
신설	8	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	실업리 산145-1	-	증) 3,131	3,131	-	
신설	9	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	감계리 산8	-	증) 3,640	3,640	-	
신설	10	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	감계리 산38	-	증) 3,492	3,492	-	
신설	11	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	전흥리 산104	-	증) 3,421	3,421	-	
신설	12	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	오류리 산48	-	증) 3,437	3,437	-	
신설	13	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	오류리 산44-1	-	증) 4,225	4,225	-	
신설	14	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	오류리 산44-1	-	증) 5,653	5,653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5	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	금학리 산66	-	증) 4,390	4,390	-	
신설	16	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	오류리 산44-1	-	증) 3,514	3,514	-	
신설	17	전기공급설비 (변전시설)	오류리 산57	-	증) 3,197	3,197	-	

■ 전기공급설비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1	전기공급설비	• 풍력발전시설 신설 (옥산면 오류리 산58-3) - A= 4,250m ²	• 국가정책에 부합하고 자연환경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요구의 증대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풍력발전시설을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함
2	전기공급설비	• 풍력발전시설 신설 (옥산면 오류리 산58-3) - A= 2,483m ²	
3	전기공급설비	• 풍력발전시설 신설 (옥산면 실업리 산93-1) - A= 3,016m ²	
4	전기공급설비	• 풍력발전시설 신설 (옥산면 실업리 산93-1) - A= 4,087m ²	
5	전기공급설비	• 풍력발전시설 신설 (옥산면 실업리 산93-1) - A= 4,880m ²	
6	전기공급설비	• 풍력발전시설 신설 (옥산면 전흥리 산104) - A= 4,100m ²	
7	전기공급설비	• 풍력발전시설 신설 (옥산면 전흥리 산109) - A= 3,208m ²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8	전기공급설비	• 풍력발전시설 신설 (옥산면 실업리 산145-1) - A= 3,131m ²		
9	전기공급설비	• 풍력발전시설 신설 (옥산면 감계리 산8) - A= 3,640m ²		
10	전기공급설비	• 풍력발전시설 신설 (옥산면 감계리 산38) - A= 3,492m ²		
11	전기공급설비	• 풍력발전시설 신설 (옥산면 전흥리 산104) - A= 3,421m ²		
12	전기공급설비	• 풍력발전시설 신설 (옥산면 오류리 산48) - A= 3,437m ²		
13	전기공급설비	• 풍력발전시설 신설 (옥산면 오류리 산44-1) - A= 4,225m ²		
14	전기공급설비	• 풍력발전시설 신설 (옥산면 오류리 산44-1) - A= 5,653m ²		
15	전기공급설비	• 풍력발전시설 신설 (옥산면 금학리 산66) - A= 4,390m ²		
16	전기공급설비	• 풍력발전시설 신설 (옥산면 오류리 산44-1) - A= 3,514m ²		
17	전기공급설비	• 변전시설 신설 (옥산면 오류리 산57) - A= 3,197m ²		• 풍력발전단지 에서 생산되 는 전기를 공 급하기 위해 사업지내 변 전시설을 군 계 획 시 설 로 결정하여 관 리하고자 함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도면계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의성군청 도시환경국 지역재생과(054-830-6344)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 군

공 고

영천시 공고 제2021 - 963호

영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영천시 완산동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에 따른 시행자지정 및 실시 계획 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0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계서류의 공람을 실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본 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7. 15.

영 천 시 장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2. 공람장소 : 영천시 도시계획과 (☎ 054-330-6592)

3. 사업개요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영천시 완산동 일원

나. 사업의 목적 :

- 영천시 완산동 일원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통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그 목적이 있음.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2) 명 칭 : 완산 미소지움1차 옆 도로확장공사

라. 사업의 내용

구분	사 업 명	노선명 (시설명)	사업시행위치	사업규모	사업기간	비고
①	완산 미소지움 1차 옆 도로확장공사	중로1-완3호선	영천시 완산동 675-7번지 일원	L=285.0m, B=10.0m	인가일~ 2026.12.31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영천시장
- 2) 주 소 : 영천시 시청로 16 (문외동)

바.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부터 ~ 2026. 12. 31.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공람장소에 비치)

아. 관계서류 및 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끝.

○ 편입토지 조서 (완산 미소지음1차열 도로확장공사)

일련 번호	소재 지	지 번	지 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완산 동	675- 7	과	198	98	김애 자	경상북도 영천시 서운길 156(서산동)				
2	완산 동	684- 2	과	47	47	김애 자	경상북도 영천시 서운길 156(서산동)				
3	완산 동	675- 5	과	874	190	정용 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51길 22, 106동 1504호 (수서동, 한아름 아파트)				
4	완산 동	687- 3	과	2,162	84	정용 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51길 22, 106동 1504호 (수서동, 한아름 아파트)				
5	완산 동	685- 1	과	191	143	김애 자	경상북도 영천시 서운길 156(서산동)				
6	완산 동	686- 4	전	3,530	749	김성 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천로 126, 102동 2401호 (범어동, 코오롱 하늘채수)	김정 곤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56길 14, 302동 801호 (중방동, 중방이-편한 세상)		
7	완산 동	1324 -17	도	2,416	6	국 (기획 재정 부)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공고 제2021-1300호

[] 통행의 금지, 제한

[]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

「도로법」 제76조제1항, 제2항, 제77조제1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 통행의 금지, 제한

[]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

합니다.

2021년 7월 15일

경 산 시 장

도로의 종류	도시계획도로	노선명	대로1-2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전체차량	구간	성암고가차로 우측램프도로
기간	2021년 7월 16일부터 ~ 2021년 8월 15일까지 [21시~ 익일 06시까지]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산-수성지역 전기공급 전력구공사 중 관로공사로 인한 야간시간때 차량 통행을 제한함 		
그 밖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회도로 : 붙임 참조 		
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신문용지 54g/m²)

붙임

차량 통행 제한 및 우회노선 지정

- 1. 도로의 종류 : 도시계획도로 대로1-2
- 2. 제한 구간 : 성암고가차로 우측램프도로
- 3. 대상 차량 : 전체 차량
- 4. 제한 기간 : 2021년 7월 16일 ~ 2021년 8월 15일 [야간 21시~익일06시]
 ※ 기상(우천 등)에 따라 통행금지 기간이 변경 될 수 있음
- 5. 이유 : 경산-수성지역 전력구공사 중 관로공사로 인한 야간때 차량통행을 제한함
- 6. 우회노선 : 붙임 참조



영양군 공고 제2021-608호

영양 군계획시설(수변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열람공고

영양군 영양읍 삼지리 일원의 영양 군계획시설(수변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 열람을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7. 15.

영 양 군 수

1. 군계획시설사업 내용

사 업 명	사업의 위치	사업규모(m ²)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영양 삼지연꽃테마파크 조성공사(2공구)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삼지리 일원	120,582	영양군수	실시계획인가일 ~ 2023년 12월

2. 열람기간 : 2021. 7. 15. ~ 2021. 7. 29.(14일간)

3.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영양군청 지역개발과 도시팀

4. 기타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양군청 지역개발과 도시팀(054-680-634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서류 및 도면은 영양군청 지역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편 입 용 지 조 서 】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합 계			160,578	120,582						
1	영양읍 동부리	8-1	전	3,350	3,350	영양군	공유지				
2	"	8-3	전	13	13	영양군	공유지				
3	"	8-4	전	20	20	국토 교통부	국유지				
4	"	9-1	묘	724	724	영양군	공유지				
5	"	9-2	도	619	619	영양군	공유지				
6	"	617-1	도	4,750	156	국토 교통부	국유지				
7	"	620- 3	구	509	14	농림축산 식품부	국유지				
8	"	639- 11	도	54	1	농림축산 식품부	국유지				
9	영양읍 삼지리	142- 3	도	1,242	180	영양군	공유지				
10	"	157	도	24,213	126	국토 교통부	국유지				
11	"	158- 2	전	416	416	영양군	공유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편입면적(m ²)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2	"	179- 2	도	206	150	영양군	공유지				
13	"	181	답	579	579	영양군	공유지				
13	"	182	답	560	560	영양군	공유지				
13	"	183	답	874	874	영양군	공유지				
13	"	184	답	1,573	1,573	영양군	공유지				
13	"	185	답	2,102	2,102	영양군	공유지				
13	"	186- 9	답	51	45	영양군	공유지				
13	"	192	답	2097	2,097	영양군	공유지				
13	"	193- 2	구	654	650	농림축산 식품부	국유지				
13	"	194	도	530	530	농림축산 식품부	국유지				
14	"	198- 2	답	1,988	1,988	영양군	공유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편입면적(m ²)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영양읍 삼지리	198- 3	답	2,759	2,759	영양군	공유지				
1	"	199	답	578	578	영양군	공유지				
2	"	200	유	58,659	58,659	농림축산 식품부	국유지				
3	"	200- 2	유	354	354	농림축산 식품부	국유지				
4	"	203	답	658	658	영양군	공유지				
5	"	204- 3	답	2,162	2,162	영양군	공유지				
6	"	205- 3	전	2,307	2,307	영양군	공유지				
7	"	205- 4	전	1,641	1,641	영양군	공유지				
8	"	205- 5	전	1,957	1,957	영양군	공유지				
9	"	205- 6	전	417	417	국토 교통부	국유지				
10	"	205- 7	전	418	418	국토 교통부	국유지				
11	"	206- 3	답	86	86	영양군	공유지				
12	"	214- 1	유	9,511	9,511	농림축산 식품부	국유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편입면적(m ²)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관리 관계	
13	"	214-2	구	16	16	농림축산 식품부	국유지				
13	"	238	답	474	474	영양군	공유지				
13	"	240	답	1,426	1,426	영양군	공유지				
13	"	241	답	2,695	2,695	영양군	공유지				
13	"	250-1	도	400	400	농림축산 식품부	국유지				
13	"	251-1	구	253	253	농림축산 식품부	국유지				
13	"	251-2	구	295	295	농림축산 식품부	국유지				
13	"	251-3	구	187	187	농림축산 식품부	국유지				
13	"	251-4	구	368	368	농림축산 식품부	국유지				
13	"	264	답	2,093	2,093	영양군	공유지				
14	"	265	답	1,966	1,966	영양군	공유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편입면적(m ²)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영양읍 삼지리	266-6	답	1,891	1,891	영양군	공유지				
1	"	267	답	1,313	1,313	영양군	공유지				
2	"	267-1	답	1,026	1,026	영양군	공유지				
3	"	267-2	답	1,101	1,101	영양군	공유지				
4	"	267-3	답	434	434	영양군	공유지				
5	"	267-4	답	1,008	1,008	영양군	공유지				
6	"	366-2	구	2,496	178	농림축산 식품부	국유지				
7	"	367-12	도	4,468	802	농림축산 식품부	국유지				
8	"	367-13	도	128	40	농림축산 식품부	국유지				
9	"	368-1	구	141	141	농림축산 식품부	국유지				
10	"	463	도	3,917	350	국토 교통부	국유지				
11	"	468	도	563	563	국토 교통부	국유지				
12	"	산54-1	임	3,288	3,288	국토 교통부	국유지				

칠곡군 공고 제2021-771호

칠곡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295-1번지 일원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본 사업 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15일.

칠 곡 군 수

1. 공람(열람)기간 : 2021. 7. 15. ~ 2021. 7. 29. (14일 이상)

2.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

가. 관계도서 비치 및 공람장소 : 칠곡군청 도시계획과

나. 의견제출기간 : 공람(열람)기간 내

다. 의견 제출처 : 칠곡군청 도시계획과

3.사업개요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295-1번지 일원

나. 사업의 목적 : 파미힐스 C.C 정문진입도로 선형개선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칠곡 군계획시설(체육시설:파미힐스C.C)사업

(2) 명 칭 : 파미힐스 C.C 정문진입도로 선형개선공사

라. 사업의 규모 : 당초 : A=1,199,249㎡

변경 : A=1,201,639㎡(증2,390㎡)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주)한길 대표이사 장문익, 설정수, 차한욱

(2) 주 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봉계리 263(매원리295-1번지)

바.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2021. 12. 31.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청 도시계획과(☎ 054-979-68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읍	리	소재지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등기부상)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주 소	성명	성명	주소	비고	
		합 계	33필지		1,204,674	1,201,639						
1	왜관	매원	185-1	전	1,978	1,978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295-1	주식회사 한길	대구은행(왜관지점) 농협은행(칠곡군지부)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권
2	왜관	매원	278	체육	3,980	3,980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295-1	주식회사 한길	대구은행(왜관지점) 농협은행(칠곡군지부)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권
3	왜관	매원	286	체육	2,581	2,581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295-1	주식회사 한길	대구은행(왜관지점) 농협은행(칠곡군지부)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권
4	왜관	매원	287-3	체육	149	149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295-1	주식회사 한길	대구은행(왜관지점) 농협은행(칠곡군지부)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권

연번	읍	리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등기부상)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주 소	성명	성명	주소	비고
5	왜관	매원	288	체육	109	109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295-1	주식회사 한길	대구은행(왜관지점) 농협은행(칠곡군지부)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권
6	왜관	매원	289	체육	5,716	5,716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295-1	주식회사 한길	대구은행(왜관지점) 농협은행(칠곡군지부)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권
7	왜관	매원	290	체육	545	545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295-1	주식회사 한길	대구은행(왜관지점) 농협은행(칠곡군지부)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권
8	왜관	매원	291	체육	13,090	13,090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295-1	주식회사 한길	대구은행(왜관지점) 농협은행(칠곡군지부)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권
9	왜관	매원	292-1	체육	4,800	4,800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295-1	주식회사 한길	대구은행(왜관지점) 농협은행(칠곡군지부)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권
10	왜관	매원	292-3	체육	820	820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295-1	주식회사 한길	대구은행(왜관지점) 농협은행(칠곡군지부)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권

연번	읍	리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등기부상)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주 소	성명	성명	주소	비고
11	외관	매원	294	체육	917	917	경북 칠곡군 외관읍 매원리 295-1	주식회사 한길	대구은행(외관지점) 농협은행(칠곡군지부)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권
12	외관	매원	294-1	체육	458	458	경북 칠곡군 외관읍 매원리 295-1	주식회사 한길	대구은행(외관지점) 농협은행(칠곡군지부)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권
13	외관	매원	295	체육	2,370	2,370	경북 칠곡군 외관읍 매원리 295-1	주식회사 한길	대구은행(외관지점) 농협은행(칠곡군지부)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권
14	외관	매원	295-1	체육	474,092	474,092	경북 칠곡군 외관읍 매원리 295-1	주식회사 한길	대구은행(외관지점) 농협은행(칠곡군지부)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권
15	외관	매원	295-4	체육	575	575	경북 칠곡군 외관읍 매원리 295-1	주식회사 한길	대구은행(외관지점) 농협은행(칠곡군지부)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권
16	외관	매원	295-5	체육	391	391	경북 칠곡군 외관읍 매원리 295-1	주식회사 한길	대구은행(외관지점) 농협은행(칠곡군지부)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권

연번	읍	리	소재지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등기부상)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주 소	성명	성명	주소	비고
17	외관	매원	295-7	체육	116,610	116,610	경북 칠곡군 외관읍 매원리 295-1	주식회사 한길	대구은행(외관지점) 농협은행(칠곡군지부)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권
18	외관	매원	296	체육	76	76	경북 칠곡군 외관읍 매원리 295-1	주식회사 한길	대구은행(외관지점) 농협은행(칠곡군지부)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권
19	외관	매원	297	체육	1,431	1,431	경북 칠곡군 외관읍 매원리 295-1	주식회사 한길	대구은행(외관지점) 농협은행(칠곡군지부)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권
20	외관	매원	750-1	체육	3,790	3,790	경북 칠곡군 외관읍 매원리 295-1	주식회사 한길	대구은행(외관지점) 농협은행(칠곡군지부)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권
21	외관	매원	신66	구거	463	463	국유지	농수산부			
22	외관	봉계	213-1	체육	35,496	35,496	경북 칠곡군 외관읍 매원리 295-1	주식회사 한길	대구은행(외관지점) 농협은행(칠곡군지부)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권

연번	읍	리	소재지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등기부상)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주 소	성명	성명	주소	비고
23	외관	봉계	529	체육	7,381	7,381	경북 칠곡군 외관읍 매원리 295-1	주식회사 한길	대구은행(외관지점) 농협은행(칠곡군지부)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권
24	외관	봉계	532	답	2,946	2,284	경북 칠곡군 외관읍 매원리 295-1	주식회사 한길	대구은행(외관지점) 농협은행(칠곡군지부)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권
25	외관	봉계	532-1	체육	1,672	1,672	경북 칠곡군 외관읍 매원리 295-1	주식회사 한길	대구은행(외관지점) 농협은행(칠곡군지부)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권
26	외관	봉계	534-1	체육	129,802	129,802	경북 칠곡군 외관읍 매원리 295-1	주식회사 한길	대구은행(외관지점) 농협은행(칠곡군지부)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권
27	외관	봉계	534-2	임야	660	660	경북 예천군 예천읍 부리살길 19-35	최춘복			
28	외관	아곡	134-2	체육	387,013	387,013	경북 칠곡군 외관읍 매원리 295-1	주식회사 한길	대구은행(외관지점) 농협은행(칠곡군지부)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권

연번	읍	리	소재지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등기부상)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주 소	성명	성명	주소	비고
29	왜관	봉계	505	전	529	45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태평로40-1, 104동 102호	이지영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압류
30	왜관	봉계	505-2	유지	207	207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295-1	주식회사 한길			
31	왜관	봉계	산59- 5	임야	158	31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295-1	주식회사 한길			
32	왜관	봉계	산86	구거	2,282	108	국유지	농림축산			
33	왜관	매원	산24	임야	1,587	1,587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295-1	주식회사 한길			



기 타

지 시 사 항

도지사 지시사항

- 2021. 7. 13.(화) 확대간부회의 시 -

관리 번호	지 시 내 용	담당부서 (협조부서)
202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청 신도시내 대학(원) 건립 검토 - 명품 신도시 조성을 위해 각종 대학(원) 건립방안검토 등 조속한 대응방안 마련 ex) 아주대(과학기술정책대학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경북캠퍼스), 포스텍(분원) 등 	정책기획관 (교육정책과)
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하계휴가 실시 - 코로나 시대, 쉼 직원 자유롭게 안전한 휴가 시행 	쉼 부서

새바람  행복 경북!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름  청렴한 세상